

헌법 권징 (현행)	교회 권징 (개정안)
<p data-bbox="465 338 725 379">권징조례 차례</p> <p data-bbox="488 466 703 507">제1장 총론</p> <p data-bbox="421 890 770 932">제2장 원고와 피고</p>	<p data-bbox="1509 331 1765 373">교회권징 차례</p> <p data-bbox="1518 437 1756 478">제1장 총론</p> <p data-bbox="1137 539 1487 794"> 제1조 권징의 의의  제2조 권징의 목적  제3조 범 죄  제4조 재판안건  제5조 재판건과 행정건  제6조 교인의 자녀 </p> <p data-bbox="1456 845 1818 887">제2장 원고와 피고</p> <p data-bbox="1137 948 1680 1378"> 제7조 원고와 피고  제8조 심리 유보  제9조 고소의 절차 및 성립  제10조 고소의 시효  제11조 제3자의 기소와 화해의 중용  제12조 기소위원 선정  제13조 기소위원과 방조위원  제14조 조사변명신청  제15조 고소 접수 전 참고사항  제16조 원고경계 </p>

### 제3장 고소장과 죄증 설명서

### 제4장 각항 재판에 관한 보통 규례

### 제5장 당회 재판에 관한 특례 규례

### 제3장 고소장과 죄증설명서

- 제17조 고소장과 죄증설명서
- 제18조 복수(複數) 범죄의 고소

### 제4장 각 항 재판에 관한 일반 규례

- 제19조 재판관할과 상회의 직접처결
- 제20조 재판회(국) 회집과 연기청원
- 제21조 소환장
- 제22조 피고 재차소환
- 제23조 피고의 재판 전 항의와 처결
- 제24조 재판의 절차
- 제25조 재판회록과 재판기록
- 제26조 제척과 기피
- 제27조 변호인
- 제28조 재판회(국)원의 쟁론과 해결
- 제29조 재판회(국)원 점명
- 제30조 기록등본 청구권 및 하회 송달
- 제31조 시별 및 해별
- 제32조 비밀재판회(국)
- 제33조 피소자 직무의 임시정지

### 제5장 당회재판에 관한 특별규례

- 제34조 소환불응 피고의 공권정지
- 제35조 당회의 시별과 해별
- 제36조 시별의 공포

## 제6장 직원에 대한 재판 규례

## 제7장 즉결 처단의 규례

## 제6장 직원재판에 관한 규례

- 제37조 목사관계 송사
- 제38조 외지에서서의 범죄
- 제39조 소환불응 피고의 처결
- 제40조 소송 당사자의 정권(停權)
- 제41조 시벌과 해벌
- 제42조 이단과 교회 분립죄
- 제43조 고소 취하 명령과 견책
- 제44조 목사직 면직과 복직
- 제45조 목사정직과 담임해제
- 제46조 피소목사 직무의 임시정지
- 제47조 장로·집사의 재판

## 7장 즉결처단의 규례

- 제48조 즉결의 대상과 피고의 권한
- 제49조 성찬 권석청원
- 제50조 교인의 이주(移住)와 통지
- 제51조 예배 불참 교인의 처리
- 제52조 목사의 사직청원
- 제53조 타교단 가입 입교인의 처결
- 제54조 목사직 포기와 관할 배척

제8장 증거조사 규례

제9장 상소하는 규례

제8장 증거 조사 규례

- 제55조 증인 채택
- 제56조 증인의 자격
- 제57조 증인의 판단
- 제58조 부부간의 증언
- 제59조 증언 방법
- 제60조 증인의 동석불허
- 제61조 증인 신분의 차서
- 제62조 증인 선서
- 제63조 증인 심문조서
- 제64조 서기 날인 문서의 증거능력
- 제65조 증인의 공술(供述)
- 제66조 증거 조사위원
- 제67조 재판회(국)원의 증언권
- 제68조 증인의 징벌
- 제69조 재 심
- 제70조 재판중의 새 증거 처리

제9장 상소하는 규례

- 제71조 상소의 종류
- 제1절 검사와 교정
- 제72조 하회록의 검사

- 제73조 하회록의 검사사항
- 제74조 하회원의 결의권 중지
- 제75조 상회의 계책권(戒責權)
- 제76조 계류사건의 선전 금지
- 제77조 하회의 오실(誤失)과 그 처결

**제2절 위탁판결**

- 제78조 위탁판결의 대상
- 제79조 상회의 사실심
- 제80조 위탁의 범위
- 제81조 당사 하회총대의 회원권
- 제82조 위탁처결의 범위
- 제83조 위탁청구의 구비서류

**제3절 소원**

- 제84조 소원의 정의와 대상
- 제85조 소원의 기일과 절차
- 제86조 3분의 1 이상의 특권
- 제87조 소원과 하회 서기의 의무
- 제88조 소원건 처리
- 제89조 처리방법의 시달
- 제90조 소원 당사자
- 제91조 소원 당사자의 회원권 정지
- 제92조 재소원 제기권
- 제93조 쌍방 권리의 의구 보존

## 제10장 이의와 항의서

## 제11장 이명자 관리 규례

### 제4절 상 소

- 제94조 상소의 정의와 피소하회원의 회원권
- 제95조 상소가 가능한 경우
- 제96조 상소의 기일과 절차
- 제97조 상소의 취하
- 제98조 법률심
- 제99조 상소심의 심리절차
- 제100조 하급심 판결의 효력
- 제101조 하회 판결 효력의 정지

## 제10장 이의와 항의

- 제102조 이의의 정의
- 제103조 항의의 정의
- 제104조 답 변 서
- 제105조 재 이의와 재 항의의 처리
- 제106조 이의권과 항의권

## 제11장 이명자 관리규례

- 제107조 외지 범죄와 처리권
- 제108조 이명증서의 발급
- 제109조 이명증서 발급과 공권의 해제
- 제110조 이명증서의 기재요건
- 제111조 폐지된 지교회 교인의 이명증서
- 제112조 폐지된 노회원의 이명증서

제12장 이주 기간에 관한 규례

제13장 재판국에 관한 규례

제12장 이주기간에 관한 규례

- 제113조 이적(移籍)과 회보의 의무
- 제114조 이명증서 발급의 기준
- 제115조 직권이명과 직권등록
- 제116조 목사의 불법 이주

제13장 재판국에 관한 규례

제1절 노회 재판국

- 제117조 노회 재판회와 재판국
- 제118조 국장과 서기의 선임 및 국의 직무한계
- 제119조 노회 재판회(국)의 성수
- 제120조 노회 재판국 재판기일과 장소
- 제121조 노회 재판국 판결의 효력
- 제122조 노회 재판기록
- 제123조 노회 재판국의 자동해체

제2절 대회 재판국

- 제124조 대회 재판회와 재판국
- 제125조 국장·서기의 선임 및 국의 직무한계
- 제126조 대회 재판회(국)의 성수
- 제127조 대회 재판국의 재판 기일과 장소
- 제128조 대회 재판국 판결의 효력
- 제129조 대회 재판기록
- 제130조 대회 재판국 보고와 대회서기의 의무
- 제131조 대회 재판국 판결의 확정

제132조 대회 재판회(국) 비용

제133조 대회 재판국과 처리권

### 제3절 총회재판국

제134조 총회 재판회와 재판국 구성

제135조 국장·서기의 선임 및 국장의 직무한계

제136조 총회 재판회(국)의 성수

제137조 총회 재판국의 판결기일과 장소

제138조 총회 재판국 판결의 효력

제139조 총회 재판기록

제140조 총회 재판국 보고와 총회서기의 의무

제141조 총회 재판국 판결의 확정

제142조 총회 재판국 비용

제143조 총회 재판국과 처리권

## 제14장 치리회 간의 재판 규례

## 제14장 치리회 간의 재판규례

제144조 치리회 간의 소원

제145조 대리위원

제146조 치리회 간의 소원건 처리



## 제1장 총론

### 제1조 권징의 의의

권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에 주신 권을 행사하며, 설립하신 법도(法度)를 시행하는 것이니 교회에서 그 교인과 직원의 각 처리회를 처리하며 권고하는 사건이 일체 포함된다.

### 제2조 권징의 목적

진리를 보호하며 그리스도의 권병(權柄)과 존영을 견고하게 하며 악행을 제거하고 교회를 정결하게 하며 덕을 세우고 범죄한 자의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는 것이다.

- 1 이상 목적을 성취하려면 지혜롭게 하며 신중히 처리할 것이다.
- 2 각 처리회는 권징할 때에 그 범행의 관계와 정형의 경중(輕重)을 상고하되 사건은 같으나 정형이 같지 아니함을 인하여 달리 처리할 것도 있다.

### 제3조 범죄

교인, 직원, 처리회를 불문하고 교훈과 심술과 행위가 성경에 위반되는 것이나 혹 사정이 악하지 아니할지라도 다른 사람으로 범죄하게 한 것이나 덕을 세움에 방해되게 하는 것이 역시 범죄이다.

### 제4조 재판 안건

성경에 위반으로 준거(準據)할 만한 일이든지 성경에 의하여 제정한 교회 규칙과 관례에 위반되는 일이든지 다른 권징 조례로 금지할 일이 아니면 재판 안건이 되지 아니한다.

## 제1장 총론

### 제1조 권징의 의의

권징은 장로교의 교리에 불복하거나 불법한 교인과 교회직원 및 각 처리회를 다스리며 돌보게 하려고 주께서 세우신 법도를 좇아 교회가 위탁받은 권한을 행사함이니, 곧 각종 고소건, 상소건, 위탁 판결건, 소원건 및 검사와 교정, 이의와 항의, 이명 관계 규례 일체 사건이 포함된다.

### 제2조 권징의 목적

권징은 진리를 수호하며 악행을 제거하고 교회를 정결하게하며, 덕을 세워 교회의 머리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지위를 견고하게 하며 범죄자의 영적 유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범죄

범죄란 교인이나 직원이나 처리회가 성경에 어긋나는 교훈과 그 같은 마음의 생각과 행위이며, 혹 악행은 아니라고 해도 다른 사람으로 범죄하게 하거나, 덕을 세우는 일에 방해되게 하는 것도 범죄가 된다.

### 제4조 재판 안건

재판 안건이란 성경 위반으로 준거(準據)할 만한 일이든지, 성경을 바탕으로 한 교회의 법규와 관례에 위반된 일이든지, 교회 권징으로 금지할 일이 아니면 재판안건이 되지 아니한다.

### 제5조 재판건과 행정건

교인이나 직원에 대하여 범죄 사건으로 소송하면 하회(下會)와 상회를 불문하고 이런 사건은 재판건이라 하고 기타는 행정건이라 한다.

### 제6조 교인의 자녀

교회 입교인의 소생 자녀는 다 교인이나 마땅히 세례를 베풀고 교회의 보호 아래 두어 정치와 권징에 복종하게 할 것이요 또 그가 장성하여 지각 있는 나이가 되면 교인의 각 항 본분을 마땅히 이행할 것이다.

## 제2장 원고와 피고

### 제7조

누가 범죄하였다는 말만 있고 소송하는 원고가 없으면 재판을 열 필요가 없다. 단, 권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치리회가 원고로 기소(起訴)할 수 있다.

### 제8조

혹시 범죄 사건이 중대할지라도 이상한 형편을 인하여 판결하기 극난한 경우에는 차라리 하나님께서 공의의 방침으로 실증을 주시기까지 유안(留案)하는 것이 재판하다가 증거 부족으로 중도에 폐지하여 일반 권징의 효력을 손실하는 것보다 낫다.

### 제5조 재판건과 행정건

교인이나 직원의 범죄사건으로 고소, 상소, 위탁 판결을 구하는 안건은 재판건이라고 하고, 치리회에 대하여 행정처결을 촉구하거나 시정을 요구하는 소원건은 행정 재판건이 되고, 그 밖에는 모두 행정건이다.

### 제6조 교인의 자녀

교회 입교인의 자녀는 다 교인이나 마땅히 유아세례를 받게 하고, 교회의 보호 아래 두어 정치와 권징에 복종하도록 할 것이요, 또 그가 장성하여 입교한 후에는 스스로 세례교인의 본분을 이행케 해야 한다.

## 제2장 원고와 피고

### 제7조 원고와 피고

고소한 자는 원고가 되고, 고소를 당한 자는 피고가 된다. 고소가 없으면 재판할 수 없으나, 치리회가 권징해야 할 사건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치리회가 원고로 기소하여 재판할 수 있다.

### 제8조 심리 유보

범죄사건이 중대하다 할지라도 이를 입증할 실증이 부족하여 판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면, 충분한 실증이 드러나기까지 심리를 유보함이 무리하게 재판을 진행하다가 증거 부족으로 재판을 중단하여 재판의 권위를 상실하는 것보다 낫다.

### 제9조

누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었다 하여 소송할 때에 치리회는 그 원고로 하여금 마태복음 18장 15~17절에 있는 주님의 교훈에 의하여 먼저 피고인과 화목하게 하여 불 동안에는 재판을 열지 말 것이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는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하였다.

### 제10조

치리회가 직접 기소하고자 할 때에는 전조를 준용할 것이 없으나 치리회나 피해자 이외의 제 3자가 기소하고자 할 때에는 치리회는 쌍방으로 중용히 사화(私和)하게 하고 가급적 재판하는 데 이르지 않게 하는 것이 옳다.

### 제11조

치리회가 기소할 때에는 곧 대한예수교장로회가 원고와 기소 위원이 되며 이 밖에는 소송하는 자가 원고가 된다.

### 제12조

치리회가 기소하여 재판할 때에는 그 회원 중 한 사람이나 혹은 두세 사람을 기소 위원으로 선정할 것이니 그 위원이 자초지종(自初至終) 원고가 되어 상회의 판결이 나기까지 행사할 것이다. 만일 소송 사건이 상회에 송달될 때에는 기소 위원은 지원대로 상회원 중에서 자기 방조자를 지명 청구할 수 있고 상회는 그 청구에 의하여 본 회원 중 한 사람 혹은 두 사람을 선정하여 방조할 것이다.

### 제9조 고소의 절차와 성립

사람에게 피해를 당한 자가 가해자를 치리회에 고소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마 18:15-17의 주님의 분부대로 권고한 진술서와 고소장과 죄증 설명서를 기록해야 한다. 이를 준행하지 아니한 고소장을 치리회 서기는 접수하지 못한다. 교인을 고소할 경우에는 당회 서기에게 제출하고, 목사를 고소할 경우에는 시찰회를 경유해야 하나 접수를 거절하면 부전지를 붙여 노회 서기에게 접수한다. 단, 고소의 절차에 하자가 없는 경우 노회 서기는 고소장의 접수를 거절할 수 없다.

### 제10조 고소의 시효

범죄 안건은 범죄 발각 후 1년 이내에 고소 할 것이요, 교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범죄일 경우에 한하여 2년이 경과한 후에는 고소할 수 없다.

### 제11조 화해의 종용

치리회가 원고로 기소할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할 것이 없으나 치리회나 피해자 이외의 제 3자가 기소하고자 할 때에는 치리회가 재판 이전에 종용하여 화해하도록 하고, 가급적 재판에 이르지 않게 함이 재판하여 판결하는 것보다 낫다.

### 제12조 기소위원 선정

권징해야 할 사건에 대하여 치리회가 기소하기로 가결하였으면, 기소위원 한 두분을 선임하여 기소장과 죄증 설명서를 재판국에 제출하게 하고, 원고 역할을 행하게 한다. 단, 기소위원은 재판국원을 겸하지 못한다.

### 제13조

교인이 다른 사람의 횡방을 당하고 그 처리회에 대하여 그일의 조사 변명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회가 상당한 줄로 인정하면 위원 일인 이상을 선정하여 조사 회보하게 할 것이요 그 처리는 그 위원의 회보를 접수하여 회록에 기재함으로 그 사건을 종결한다.

### 제14조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제기(提起)하는 소송을 접수하려 할 때에는 신중히 고려함이 옳다.

1. 평소에 피고에게 대하여 혐의가 있는 자
2. 성격이 불량한 자
3. 재판 후 처벌 중에 있는 자
4. 피고의 처벌을 인하여 이익을 얻을 자
5. 소송을 좋아하는 성질이 있는 자
6. 지각이 부족한 자

### 제15조

기소인이 처리회에서 선정한 위원이 아니요 자의(自意)로 소송한 자이면 개심(開審)하기 전에 처리회는 먼저 경계하되 「송사가 허망하여 너의 악의와 경솔한 심사가 발현되면 형제를 횡방하는 자로 처단하겠다」 언명할 것이다.

### 제13조 기소위원과 돕는 위원

처리회가 기소하여 판결한 사건이 상소되면 기소위원은 상소심에서도 권리와 의무가 계속되고, 상회원 중에서 자기 돕는자를 지명 청구할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상소심은 이를 허락해야 한다.

### 제14조 조사변명 신청

횡방을 당한 교인이 처리회에 조사변명을 신청할 때에 그 이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처리회는 위원 1인 이상을 선임하여 조사하게 하고 이를 회의록에 기재함으로 그 사건을 종결한다.

### 제15조 고소 접수 전(前) 참고사항

처리회 서기는 고소 접수 전(前)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1. 평소 피고를 싫어하던 자를 피고로 하는 고소
2. 성격 불량자의 고소
3.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시벌 하에 있는 자의 고소
4. 피고가 시벌되면 반사적 이익을 얻을 자의 고소
5. 소송을 좋아하는 자의 고소
6. 지각이 부족한 자의 고소

### 제3장 고소장과 죄증설명서

#### 제16조

소장에는 범하였다는 죄상을 밝히 기록하고 죄증 설명서에는 범죄의 증거를 상세히 기록하는 것이니 범죄의 날짜 및 처소와 정형과 각 조에 대한 증인의 성명을 자세히 기록할 것이다.

#### 제17조

소장은 1 조에 한 가지의 범죄 사건만 기록하되 한 사람에게 대하여 여러 가지 범행을 동시에 고소할 수 있고 매사건에 죄증 설명서를 각기 제출할 것이며 치리회는 결의에 의하여 그 모든 사건을 일시에 재판하되 매사건을 축조(逐條)하여 가부 결정한다.

#### 제18조

손해를 당한 사건에 피해자 측의 개인 혹 두사람 이상이 직접 고소하고자 하면 그 소장과 마태복음 18장 15~17절에 기록한 바 주님의 교훈대로 행하여 보았다는 진술서까지 제출할 것이다.

#### 제16조 원고 경계

치리회는 재판 사건 심리에 앞서 원고에게 “송사가 허망하여 원고의 악의와 경솔한 심사가 드러나면 형제를 훼방하는 자로 처단할 것이다.” 라고 선언해야 한다.

단, 치리회가 원고로 기소한 경우의 기소위원에게는 예외로 한다.

### 제3장 고소장과 죄증 설명서

#### 제17조 고소장과 죄증 설명서

고소장에는 죄상(罪狀)을 기록하고, 죄증 설명서에는 범죄의 증거를 자세히 기록하여야 하되, 범죄 시일과 장소 및 그 정형(情形)과 증인의 성명을 기록해야 한다.

#### 제18조 복수(複數) 범죄의 요소

고소장에는 피고의 여러 가지 범행을 함께 고소할 수 있고, 그 죄증에 대하여는 범행마다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 제4장 각 항 재판에 관한 보통 규례

### 제19조

목사에 관한 사건은 노회 직할에 속하고 일반 신도에 관한 사건은 당회 직할에 속하나 상회가 하회에 명령하여 처리하는 사건을 하회가 순종하지 아니하거나 부주의로 처결하지 아니하면 상회가 직접 처결권이 있다.

### 제20조

치리회가 재판회를 회집하면 회장이 먼저 그 이유를 공포하고 정중히 처리하기를 선언한 후 그 고소장과 죄증 설명서를 한번 낭독할 지니 만일 원피고가 당석에서 심문함을 원하지 않고 연기를 청원하면 다음 몇 사건만 행한다.

1. 고소장과 죄증 설명서 1통을 피고에게 교부할 것 (각 조에 대한 증인의 성명도 자세히 기록할 것).
2. 원피고와 그 관계자에게 다음 회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발할 것(10일 이상으로 정함).
3. 환장에는 그 치리회의 명칭을 기록하고 회장 서기가 날인할 것.
4. 원고 혹 피고의 청구에 의하여 증인도 출석하게 할 것이요 피고는 자기 증인의 성명을 원고에게 알게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 제21조

소환장은 그 치리회가 본인에게 전달할 것이니 본인에게 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최후 거주소에 송달하되 개심하기 전에 의식 송달(意識送達)한 증거가 있어야 합당하다.

## 제4장 각 항 재판에 관한 보통 규례

### 제19조 재판관할과 상회의 직접처결

목사에 대한 사건은 노회 관할에 속하고, 교인에 대한 사건은 당회 관할에 속하나, 상회가 결의하여 처결을 명한 사건에 관하여 하회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위 관할의 구애 없이 상회 차기 정기회가 직접 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제20조 재판회(국) 회집과 연기청원

치리회가 재판회(국)로 회집하면 회(국)장이 아래와 같이 그 이유를 공포하고, 정중히 처리하기를 선언한 후, 그 고소장과 죄증설명서를 낭독한다. “우리가 지금 ○○교회 계쟁관계 재판사건을 심리하게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재판관으로서 마땅히 주님의 뜻을 따라 심단할 것입니다.” “이어서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판관된 우리의 직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직권으로 판단할 사건이니 정중하고도 공평하게 신중히 처결한 것입니다.” 만일 원고나 피고가 재판연기를 청원하면 재판회(국)는 피고에게 고소장과 죄증설명서를 교부하고, 다음 재판회(국)의 회집 시일과 장소를 고지(告知)하고, 증인 등에게는 회집 시일 10일 이상을 선기하여 소환장을 반부하되 재판회(국)장과 서기가 날인하여 등기 배달증명 우편으로 송달해야 한다.

### 제21조 소환장

재판회(국)의 소환장은 원·피고와 증인 등 당사자에게 직접 송달하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최후 거주지 주소로 등기 배달증명으로 우송한다. 피고 유고시에는 대리(변호인)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 22조

피고가 소환장을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면 치리회는 재차 소환장을 발송하되 그 소환장에 대하여 천연적 고장이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본 권징 조례(34, 39, 47 조)에 의하여 시벌하겠다고 밝힐 것이다. 피고가 두 번 소환을 받고 출석하지 아니하면 궐석한 대로 판결할 것이니 이런 경우에는 치리회가 피고를 위하여 변호할 자를 선정한다. 처음 소환할 때에는 재판 기일을 10일 이상으로 정할 것이나 재차 소환할 때에는 치리회가 형편에 의하여 기일을 정할 수 있고 증인 소환도 예에 준할 것이다.

## 제23조

피고는 소환장에 정한 기일대로 그 치리회에 출석할 것이요 사고가 있으면 대리인으로 출석하게 할 수 있다.

1. 피고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소원을 제출할 수 있다.

- (1) 그 치리회가 정규에 의한 집회가 아닌 줄로 인정하는 때
- (2) 소송 사건에 대하여 비법 간섭인 줄로 아는 때
- (3) 고소장이나 죄증 설명서가 양식에 위반되거나 헌법 적용이 부적당한 줄로 인정하는 때
- (4) 기타 중요한 사건에 대하여

2. 치리회는 재판하기 전에 그 소원에 대하여 원고 및 피고의 변명을 듣고 그 직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처단할 수 있다.

- (1) 재판을 각하(却下)하는 일
- (2) 공평 정직하기 위하여 그 고소장이나 재판 기록에 위반된 것을 그 사건의 본 성질을 변동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개정(改正)하

## 제22조 피고의 재소환

피고가 소환장을 받고서도 출석하지 아니하면 재차 소환해야 하고, 재차 소환에도 불가항력적인 이유 없이 불응하면 궐석재판에 의해 소환불응에 따르는 시벌까지 받게 된다. 단, 궐석재판에는 재판국이 피고 대리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며 처음 소환할 때에는 재판기일을 10일 이상으로 정할 것이나, 재차 소환할 때에는 치리회가 형편에 의하여 기일을 정할 수도 있고, 증인 소환도 이에 준한다.

## 제23조 피고의 재판 전(前) 항의와 처결

1. 피고는 아래와 같은 경우 본 재판회(국)에 항의할 수 있다.

- ①본 재판회(국) 회집이 법규에 위배된 경우
- ②본 재판회(국)의 처사가 불법적인 간섭으로 인정될 경우
- ③고소장이나 죄증설명서의 양식과 헌법 인용이 잘못된 경우
- ④기타 중요한 하자가 나타났을 경우

2. 재판회(국)는 이 항의에 따라 원고와 피고의 변명을 듣고 아래와 같이 처결한다.

- ①본 재판사건을 각하하는 일
- ②제출된 고소장이나 죄증설명서의 본 성질을 변경하지는 않는 범위 안에서 시정을 허락하는 일

3. 고소장과 죄증 설명서에 하자가 없고, 따라서 재판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재판회(국)는 소송사실에 대하여 피고에게 승인 여부를 물을 수 있고, 피고가 답변하면 재판회록에 기재한다.

기를 허락하는 일

3. 리회는 그 고소한 사건이 적법적이요 고소장과 설명서가 재판할 가치가 있는 줄로 인정하면 피고에게 향하여 그 소송의 사실에 대하여 승인 여부를 심문할 것이요 그 공술은 유죄라든지 무죄라든지 부답( )이라든지 다 회록에 기록하고 재판하여 처리할 것이다.

### 제24조

본 치리회는 재판하기 위하여 개회 날짜를 정하고 원피고에게 정식 통지를 발한 후에 다음 순서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증인을 심문하되 원고는 피고의 증인에 피고는 원고의 증인에 대하여 각각 대질(對質)할 수 있으며 그 밖에도 정당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고
2. 그 후에 원고나 피고는 증거를 반증(反證)하기 위하여만 새 증인이나 새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3. 재판 중에 쌍방의 새 증거가 발견되면 치리회가 채납할 수 있으나 채납하기 전에 피고에게 증인의 성명과 증거의 성질을 통지하되 치리회가 상당한 유예 시간을 주기로 공평이 작정한다.
4. 증인의 말을 청취한 후에 원고 피고가 진술한다.
5. 치리회는 즉시 원고 피고와 변호인과 방청인을 일체 퇴석하게 하고 비밀회를 연다.
6. 본 치리회원만 합의(合議)한다.
7. 고소장과 설명서의 각 조에 대하여 일일이 가부 결정한다.
8. 본 안건 전부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최후 결정은 회록에 기록한다.

### 제24조 재판의 절차

재판회(국)의 재판절차는 아래와 같다.

#### 1. 증인심문

##### 1) 증인선서

재판회(국)장은 관계증인들에게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아래와 같이 선서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여 재판회(국)에 제출한다.

증인 선서문

“후일에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서 문답할 것처럼, 지금 알지 못함이 없으사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재판서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였으니, 사실대로 직언하며, 사실 전부를 말하며, 사실 외에 덧붙이지 아니할 것을 선서합니다.

년 월 일

증인 ○ ○ ○ (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 회 00노회 재판회(국)장 귀하

00교회 당회 재판회장 귀하

#### 2) 심문절차

##### ① 원고증인 심문

<죄증 설명서에 기록된 증인이나 새로 신청된 증인 중 재판회



	<p>(국)가 채택한 증인만 심문한다.&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ㄱ. 재판회(국)의 심문</li> <li>ㄴ. 증인 제출측(원고)의 심문</li> <li>ㄷ. 상대방(피고)의 심문</li> <li>ㄹ. 재판회(국)의 재심문</li> </ul> <p>② 피고증인 심문</p> <p>&lt;원고에게 미리 알릴 필요는 없고, 재판회(국)이 채택한 증인만 심문한다.&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ㄱ. 재판국의 심문</li> <li>ㄴ. 증인 제출측(피고)의 심문</li> <li>ㄷ. 상대방(원고)의 심문</li> <li>ㄹ. 재판회(국)의 재심문</li> </ul> <p>③ 대질</p> <p>원고와 피고는 각기 상대방의 증인과 대질할 수 있다.</p> <p>2. 반증</p> <p>원고와 피고는 각기 반증하기 위한 새 증인 혹은 새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p> <p>3. 새 증거</p> <p>재판 중에 발견된 새 증거는 피고에게 소명기회를 주지 아니하고서는 재판회(국)가 채택(採納)하지 못한다.</p> <p>4. 원·피고 진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원고진술</li> <li>② 피고진술</li> <li>③ 변호인의 변론</li> </ul> <p>5. 합의(合議)</p>
--	---

① 공개정지

재판회(국)원 외에는 아무도 동석하지 못한다.

② 죄증 설명서를 한 조목씩 낭독한 후 각기 가부를 물어 유죄  
혹 무죄를 결정한다.

③ 한 조목만이라도 유죄로 판단했으면 결론은 유죄요, 전 죄목  
이 무죄이면 본 재판사건의 결론은 무죄이다.

④ 최후 결정

유죄결론이 났을 경우 재판회(국)원들이 제각기 교회권징 제5장  
제35조 및 동 제6장 제41조에 의한 시벌 중 합당한 시벌을 가려 투  
표하게 하여, 과반수로 결정하되, 2차 투표에도 과반수 미달이면 3차  
투표에서는 종다수로 결정한다.

단, 지각이나 결석 등으로 전체 재판에 동참하지 못한 재판회(국)원은  
투표권이 박탈되나, 전체 참석 재판회(국)원과 원고와 피고가 함께 동  
의 승낙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6. 판결문 작성

판결문 작성은 재판회(국)장과 서기 또는 소위원회에 일임하여 작  
성한다.

7. 재판 회록과 채택된 판결문에는 전체국원이 서명날인 해야 한다

8. 선고(언도)

원고와 피고를 일어서게 하고 판결문에 의해 재판회(국)장이 선고한  
다. 단, 형편상 등기·배달증명 우편을 통해 원고와 피고에게 송달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9. 시벌된 자를 위한 기도

10. 찬송

11. 폐정기도

**제25조**

본 처리회는 고소장과 설명서와 피고의 답변과 최후 결정과 모든 처리 조건과 명령한 것과 그 이유를 회록에 밝혀 기록하고 상소될 때는 그 상소한다는 예고와 그 이유도 상세히 기록할 것이다. 쌍방의 구술(口述)과 각 항 서류도 수집하여 서기가 서명 날인하면 완전한 재판 기록이 된다.

**제26조**

최상급회를 제한 외에 다른 처리회에서 심리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원고 피고가 반항할 수 있고 그 반항하는 것을 회록에 기재할 것이다.

**12. 폐정선언**

**13. 폐정**

**제25조 재판 회록과 재판 기록**

**1.재판 회록**

고소장과 죄증 설명서, 피고의 답변서, 최후결정 및 제반 처리건과 명령과 그 이유를 명기하고, 상소될 경우에는 상소 통지서와 상소이유도 자세히 기록한다.

**2.재판 기록**

원고와 피고의 진술과 관계 서류 일체를 모아서 서기가 서명 날인한다.

**제26조 제척(除斥)과 기피(忌避)**

**1. 항의와 답변**

최상급 재판회(국) 외에 하급심의 심리 안건에 대해서는 원·피고가 항의할 수 있고, 본 재판회(국)는 답변서로 답변하고 본 항의 건을 종결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재판국원의 제척과 재판의 기피를 할 수 있다.

**2. 재판국원의 제척**

재판국원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리·재판에서 제척된다.

- ① 재판회(국)원이 원고 혹은 피고가 되었을 경우
- ② 재판회(국)원이 원소 혹은 피고의 친인적인 경우
- ③ 본 재판사건 판결로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 ④ 재판국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인·감정인이 된 경우

**제27조**

원고와 피고는 변호인을 사용할 수 있고 구두(口頭) 혹은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할 수 있다.

1. 본 장로회 목사 혹은 장로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정하지 못할 것이요 변호인 된 자는 그 재판 회합 의식에 참여하지 못한다.
2. 치리회가 소송의 원고가 될 때는 기소 위원(제 12 조에 말한 위원)과 상회에서 선정한 방조 위원이 치리회의 변호인이 된다. 단, 누구를 물론하고 변호 보수금을 받는 것은 불가하다.

**제28조**

재판 진행중에 규칙 혹은 증거에 대하여 쟁론이 발생하면 회장은 쌍방의 변명을 들은 후 직권으로 시비를 결정할 것이니 회원중 누구든지 그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재판회에 항의할 것이요 그 항의에 대하여는 이의(異義)없이 회장이 즉시 가부 취결할 것이다. 이런 결정은 원고 혹은 피고의 지원에 의하여 회록에 기재한다.

**3. 재판국원의 기피**

당사자는 재판국원이 이해관계로 인하여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되는 경우 재판 국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단 기피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판국은 기각 결정을 하고 재판을 진행하며, 기피사유가 정당할 때에는 재판국은 해당 재판국원을 당회 사건의 심리·판결에서 배재 시키고 재판을 진행한다. 단, 기피되는 국원의 기피로 빠져도 성수 요건에는 변동이 없다.

**제27조 변호인**

원고와 피고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변호인을 통해서 구두나 서면으로 답변하게 할 수 있다.

1. 변호인은 본 교단에 소속된 목사 혹은 장로여야 한다.
2. 치리회가 원고로 기소한 사건에는 치리회가 선임한 대리위원이 원고역할을 담당하며, 상소되었을 경우에는 상회원 중에서 지명청구하여 방조를 구할 수 있다. 단, 변호인은 보수금을 받지 못한다.

**제28조 재판회(국)원의 쟁론과 해결**

재판 진행 중 회의규칙이나 증거에 대한 쟁론이 발생하면 재판회(국)장에게 우선 설명권이 있고 재판회(국)장이 공포한 해석대로 시행하되, 재판회(국)원 중 2인 이상이 항변하면 회장은 변론 없이 즉시 가부를 물어 재판회(국)장이 공포 해석한 바를 바로 잡아야 한다. 단, 이런 처결은 원·피고의 요청에 따라 재판회록에 기재해야 한다.

### 제29조

재판할 때 처음부터 나중까지 출석하여 전부를 듣지 아니한 회원은 원고 피고와 그 재판 회원이 동의 승낙하지 아니하면 그 재판에 대하여 투표권이 없고 최상급 재판회를 제한 외에는 정회 혹 휴식을 불문하고 개회 때마다 호명하고 결석한 회원의 성명은 회록에 기재한다.

### 제30조

원고와 피고는 등사비를 제공하고 그 안전 기록 등본을 청구할 수 있다. 상소 안전은 판결한 후 기록과 상소 판결문을 원하회(原下會)에 내려 보낸다.

### 제31조

치리회가 시별하거나 해별하는 때에는 장로회 예배 모범 제 16, 17장의 규정한 바에 의하여 처리함이 옳다.

### 제32조

치리회는 회원 3분의 1의 가결로 비밀 재판회를 열 수 있다.

### 제33조

치리회가 교회의 덕을 세우기에 합당한 듯하면 재판이 귀결되기까지 피의자의 직무를 정지도 하고 성찬에 참여도 못하게도 할 수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그 안전을 속히 판결함이 옳다

### 제29조 재판회(국)원 점명

(국)원이 지각하거나 결석하여 재판의 전체과정에 미참하였으면 합의과정에 투표권을 잃게되니, 서기는 재판회(국)를 개정할 때는 물론, 휴정, 휴식 후의 회집에서도 점명(點名)하여 지각자와 결석자는 재판회록에 기재해야 한다.

### 제30조 기록 등본 청구권 및 하회 송달

원고와 피고에게는 관련 재판사건의 재판기록 등본을 청구할 수 있고, 재판회(국)는 마땅히 이를 발급해야 한다. 또한 상소건을 판결한 재판회(국)는 판결 후 10일 이내에 재판기록과 판결문을 원심 하회로 하송해야 한다.

### 제31조 시별 및 해별

재판회(국)의 시별과 해별은 헌법 예배모범 제16장과 제17장의 규정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직권과 권병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 제32조 비밀 재판회(국)

재판회(국)원 3분의 1이상의 찬동이 있을 때에는 재판회(국)가 비밀회로 회집할 수 있다.

### 제33조 피소자 직무의 임시 정지

1. 치리회에 소송안건이 계류 중일 때, 재판회(국)는 피소자의 직무와 성찬 참여권을 임시정지 할 수 있다.
2. 치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일반안전 심의에서, 재판 당사자의 발언

## 제5장 당회 재판에 관한 특별 규례

### 제34조

당회는 피고가 재차 소환을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리 변호인도 파송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할지라도 심문에 대하여 응답하기를 불응할 때는 그 패려함을 회개하고 당회에 복종하게 될 때까지 시벌할 것이다.

### 제35조

당회가 정하는 책벌은 권계(勸誡), 견책(譴責),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 출교니 출교는 종시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만 한다. 단, 해벌은 그 회개 여하에 의하여 행하거나 이에 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치리회가 의정(議定)할 것이다.

### 제36조

그 죄에 대하여 작성한 것을 교회에 공포 아니하기도 하며 공포할 지라도 그 교회에나 혹 관계되는 교회에서만 할 것이다.

권·투표권을 정지시킬 수 있다.

3. 상소인·피상소인이 속하는 치리회의 회원은, 그 재판 사건에 관하여 발언권·투표권이 정지된다.

4. 이런 경우에는 관계 재판사건을 3개월 이내에 종결하여야 한다.

## 제5장 당회재판에 관한 특별규례

### 제34조 피고의 소환불응과 공권정지

당회재판회는 피고가 재차소환을 받고서도 출석하지 아니하고 대리인도 파송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출석은 하고서도 심문에 응하지 아니하면 그 거스르는 마음을 회개하고 순복할 때까지 교인의 공권을 정지할 수 있다.

### 제35조 당회의 시벌과 해벌

당회 재판회의 시벌은 권계(勸戒) 견책(譴責), 정직(停職), 면직(免職), 수찬정지, 제명출교이다. 다만 제명출교는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만 한다. 단, 권계와 견책은 판결 선고 후 3개월 후 자동 소멸되고, 무기시벌의 경우 회개가 확실하면 헌법 예배모범 제 17장에 의해 해벌할 수 있고, 회개한 사실에 논란이 있으면 소속 치리회가 결정한다.

### 제36조 시벌의 공포

교회 앞에서 시벌을 공포하는 여부는 당회재판회가 의정하되, 공개된 범죄에 대한 시벌은 교회 앞에서 공포하는 것이 원칙이요, 은밀한 범죄에 대한 시벌은 공포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6장 직원에 대한 재판 규례

### 제37조

복음의 영예와 발전은 목사의 명성에 관계됨이 많으므로 노회는 마땅히 조심하여 소속 목사의 개인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를 자세히 살필지니 그 목사됨을 인하여 편호(偏護)하여 불공정한 판결을 하지 말며 혹 그 죄를 경하게 벌하지 말 것이나 또한 목사에 대하여 사소한 곡절로 소송하는 것을 경솔히 접수하지도 말 것이다.

### 제38조

목사가 본 주소에서 떠나 먼 곳에 있어 피소된 때 그 본 노회가 실정은 알 도리가 없고 그 소송 발생한 지방을 관할하는 노회가 유죄한 줄로 생각하면 그 사건의 성질이 어떠한 것을 당연히 그 본 목사의 노회에 통지할 것이요 본 노회는 그 통지를 접한 후에 그 사건이 종교상 명예에 관계되는 것이면 즉시 재판하는 것이 옳다.

### 제39조

피고된 목사가 재차 소환함을 받고 자기도 출석하지 아니하고 변호인도 파송하지 아니하면 노회는 그 거역함을 인하여 정직함이 옳고 삼차 소환에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리할 변호인도 파송하지 아니하면 수찬 정지에 처할 것이다.

### 제40조

어느 치리회를 물론하고 소송중에 있을 동안에는 그 치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일반 의사에 언권과 투표권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 제6장 직원에 대한 재판 규례

### 제37조 목사관계 송사

복음의 영예와 발전은 목사의 명성과 관계됨이 많으므로, 노회는 소속목사의 직무상 행위는 물론 사적인 행위까지 자세히 살펴야 하니, 목사가 피소되었다고 목사를 편호하여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목사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엄준한 것도 합당치 아니하니, 공정하게 판결할 것이요,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 세 증인 없으면 받지도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딤펴전 5:15-20)고 하신대로 행하여야 한다.

### 제38조 목사의 외지에서의 범죄

목사가 본 주소를 떠나 먼 곳에서 범죄 하였다는 고소는 노회가 이를 접수하기 전에 필요에 따라 그 소송 발생지역의 노회에 문의할 수 있고, 그 노회의 회보가 유죄 의견이 아닐 경우에는 경솔히 접수하지 못한다.

### 제39조 소환 불응 피고의 처결

피고된 목사가 재차 소환장을 받고서도 출석하지 아니하고 대리인도 파송하지 아니하면 노회 재판회(국)는 그 거역으로 인하여 정직함이 옳고, 3차 소환에도 출석하지 아니하고 대리인도 파송하지 아니하면 궐석 재판의 판결로 궐석 재판의 판결로 수찬 정지에 처할 수 있다.

### 제40조 소송당사자의 정권

소송 당사자는 그 소송 사건이 종결 될 때 까지 일반 의사(議事)에 치리회는 결의에 따라 언권과 결의권(투표권)을 정지시킬 수 있다.

#### 제41조

피고를 정죄하게 되면 권계나 견책이나 정직이나 면직(정직이나 면직할 때에 수찬 정지를 함께 할 때도 있고 함께 하지 아니할 때도 있다) 이나 출교할 것이요 정직을 당한 지 1년 안에 회개의 결과가 없으면 다시 재판할 것 없이 면직할 수 있다. 단, 해벌할 때는 제 35 조의 단항(但項)을 적용한다.

#### 제42조

목사가 이단을 주장하거나 불법으로 교회를 분립하는 행동을 할 때에 그 안건이 중대하면 면직할 것이다(그 행동이 교리를 방해하려 하여 전력으로 다른 사람을 권유하는 형편이 있는지 지식이 부족한 중에서 발생하고 도에 별로 해되지 아니할 것인지 심사후에 처단함이 옳다).

#### 제43조

노회가 심사한 결과 그 안건이 사소한 사건이요 교인들도 그의 반성을 족한 줄로 알고 목사 시무에도 구애됨이 없으면 그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만 처리하고 그 소송 사건을 취하(取下)하게 할 것이다.

#### 제44조

악행을 인하여 목사직 해직을 당한 자가 깊이 회개할지라도 오랫동안 특별히 모범될 만한 겸손과 덕을 세우는 행위가 뚜렷하여 그 소재지 치리회의 관찰에, 교역에 종사함이 도에 방해가 되지 아니할

#### 제41조 시별과 해벌

직원의 시별은 권계, 견책, 정직, 면직(면직에는 수찬정지를 병과할 수도 있다) 또는 제명출교할 것이요, 정직을 당하고서도 1년 안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시 재판하지 아니하고 행정회를 치리회로 변경하여 면직할 수 있다. 단, 권계와 견책은 판결 선고 후 3개월에 자동 소멸되고, 무기시별의 경우 회개한 사실이 확실하면 헌법 예배모범 제17장에 의해 해벌할 수 있고, 회개한 사실에 이론이 있을 경우에는 치리회가 의결한다.

#### 제42조 이단과 교회 분립죄

목사가 이단을 주장하거나, 동조하거나, 교회, 노회, 총회를 불법으로 분립하는 행동을 할 경우에 그 사건으로 중대한 손상을 입힌 것으로 인정되면 면직할 것이다.

#### 제43조 고소 취하 명령과 견책

목사를 고소한 안건이 사소한 일이요 교인들도 그의 반성을 족한 줄로 알고 그의 교회 시무에도 구애됨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동일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처결하고 그 소송사건의 취하를 명령한다. 만일 취하 명령을 거역하면 재판 없이 견책 해야 한다.

#### 제44조 목사직 면직과 복직

목사직이 면직된 자는 깊이 회개할지라도 오랫동안 특별히 모범될 만한 겸손과 덕을 세우는 행위가 뚜렷하고, 다시 교역에 종사함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권위에도 손상됨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당초 면직된 치리회나 그 치리회의 결의대로 위탁받은 치리회가 다시 목사로



줄로 확인할 때는 목사로 임직하되 당초 면직한 치리회가 직접 행사하든지 그 회의 결의대로 위탁 받은 치리회가 행사할 것이다.

#### 제45조

지교회에 담임 목사된 자가 면직을 당하고 출교는 되지 아니하였으면 노회는 그 해직됨은 선언할 것이요 이런 경우에는 그에게 평교인의 이명서를 주어 원하는 지교회로 보내되 이명서에는 그 정형을 자세히 기록할 것이다. 담임 목사를 정직할 때는 그 담임까지 해제할 수 있으나 상소한다는 통지가 있으면 그 담임을 해제하지 못한다.

#### 제46조

노회는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피소된 목사의 직무를 임시 정지할 수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그 재판을 속결함이 옳다.

#### 제47조

장로 및 집사에 대하여 재판할 사건이 있으면 본 장 각 조에 해당한 대로 적용할 것이다.

### 제7장 즉결 처단의 규례

#### 제48조

누구든지 치리회 석상에서 범죄하거나 다른 곳에서 범죄한 것을 자

안수 임직하되, 헌법 예배모범 제17장과 교회권징 제5장 제35조의 단서규정에 의한다.

#### 제45조 목사 정직과 담임 해제

지교회에 담임목사된 자가 면직을 당하고 출교는 되지 아니하였으면 노회는 그에게 평교인의 이명서를 주어 원하는 지교회로 보내되 이명서에는 그 사정과 형편을 자세히 기록해야 한다. 담임목사를 정직할 때는 그 담임까지 해제할 수 있으나 상소한다는 통지가 있으면 그 담임을 해제하지 못하므로 정직 목사는 정직기간 중 휴무할 수밖에 없으나 지교회에서는 목사의 생활비를 의수히 지불해야 하며, 노회는 해 교회에 다른 목사의 시무를 허락하지 못한다.

#### 제46조 피소된 목사 직무의 임시 정지

노회재판회(국)는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피소된 목사의 직무를 임시 정지할 수 있으나 이런 경우 해당 재판은 3개월 이내에 종결해야 한다.

#### 제47조 장로·집사의 재판

장로·집사를 피고로 하는 재판사건도 교회권징 제6장 각조에 해당한 대로 적용한다.

### 제7장 즉결 처단의 규례

#### 제48조 즉결 심판의 대상과 피고의 권한

누구든지 치리회의 재판회(국) 석상에서 범죄하거나, 이명 없이 적(소

복할 때는 치리회가 먼저 그 사실을 청취한 후 즉시 처결할 수 있다.

1. 치리회 석상에서 범죄한 자는 그 재판에 대하여 2일 이상의 연기를 청구할 권이 있다.
2. 이런 경우에는 범죄 사실과 결정한 이유를 회록에 상세히 기록할 것이요 다른 안건과 같이 상소할 수 있다.

#### 제49조

재판할 만한 범죄가 없는 입교인이 당회에 자청하기를, 자기는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노라 자인할 때는 당회가 이 사건을 신중히 고려하여 그 청원이 도리에 대한 오인(誤認)이 아닌 줄로 확인하면 그 청원을 임시로 허락하고 그 사실을 당회록에 상세히 기록함이 옳다.

#### 제50조

어떠한 입교인이든지 다른 지방에 옮겨 가면 본 교회 목사나 당회 서기는 그 거주를 그 지방 교회 목사 혹은 당회 서기에게 통지할 것이다.

1. 다른 지방에 옮겨 간 교인이 상당한 이유 없이 2년이 경과하도록 이명서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본 당회는 재삼 탐문하여 그 회보를 접하기까지 그 성명을 별명부에 옮겨 기록(년월일(年月日을 상세히 기록할 것)할 것이다.
2. 어떠한 교인을 불문하고 다른 곳에 옮긴 지 3년간 실종된 경우에도 당회는 전 항을 준용하되 그 사유를 회록에 상세히 기록할 것

속)을 옮기거나, 다른 곳에서 범죄한 것을 자복할 경우에는 재판회(국)는 사실을 청취확인 후에 즉시처결 할 수 있다.

1. 재판회(국) 석상에서 범죄한 자는 그 재판에 대하여 2일 이상 연기를 청원할 수 있고, 재판회(국)는 이를 허락해야 한다.
2. 이런 경우에는 범죄사실과 처결이유를 재판회 회의록에 자세히 기록할 것이요 상소하는 규례에 따라 상소할 수 있다.

#### 제49조 성찬 결석청원

만한 범행이 없는 입교인이 스스로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고 자청할 때 당회는 신중히 고려하여 그 청원이 도리에 대한 오인이 아니라고 확인되면 그 청원을 임시로 허락하고 그 사실을 당회록에 기재해야 한다.

#### 제50조 교인의 이주 통지와 별명부 등제

어떤 입교인이든지 다른 지방으로 이주(移住)하였으면 본 당회가 그 사실을 이주지역 지교회 목사나 당회서기에 통지해야 한다.

1. 다른 지방으로 이주한 입교인이 상당한 이유 없이 6개월이 경과하도록 이명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본 당회는 그 입교인을 별명부를 옮겨야 하고 다시 돌아오면 절차 없이 다시 입교인 명부로 등재한다.
2. 지방으로 이주(移住)한 입교인이 1년간 실종된 경우에도 전 항을 준용할 수 있으나 당회의 특별결의가 없는 한 입교인 명부에 등재할 수 없다.
3. 책벌인 명부에는 책벌 당한 자를 기입하고, 별명부에는 위 1항과 2항 해당자를 기입하며 노회에 제출하는 통계표에도 제외된다.

이다.

3. 책별인 명부에는 시별한 자를 기입하고 별명부에는 전 1, 2항에 해당하는 자를 기입하고 노회에 제출하는 통계표를 이를 완전한 교인으로 셈하지 말 것이다.

4. 당회는 매년 노회에 통계표를 제출하기 전에 일반 교인의 명부에 일일이 검사하여 권징 조례에 의하여 정리하되 거주가 분명한 자에게는 먼저 통지함이 옳고 또 시별된 자에게는 해별되도록 힘쓸 것이다.

#### 제51조

본 지방에 거주하는 본 교회 입교인이 뚜렷한 범과가 없이 교회 각항 의식을 행하는 회석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당회는 그 교인을 출석하도록 권면할 것이요 1년이 경과하도록 일항 듣지 아니하면 당회는 그 교인에게 먼저 통지한 후 책벌할 것이다. 그 후 교인에게 대하여 아무 비난이 없고 다시 교회의 종교 의식에 출석하면 해별한다.

#### 제52조

무흠한 목사가 정체 제 17장 제 1 조 3 조에 의하여 노회에 청원을 제출하면 그 목적과 이유를 상세히 알아 결정하되 제 3 조의 경우에는 상당한 방법으로 만1년간 유예를 지난 후 노회 관할에 그 목사가 단마음으로 유익하게 시무하지 못할 줄로 인정하면 사직을 허락할 것이요, 그 성명을 노회 명부에서 제거하고 입교인의 이명서를 주어 소원하는 지교회로 보낼 것이다.

4. 당회는 매년 통계표를 노회에 제출하기 전에 교인명부를 검사하여 교회권징에 의해 정리하되, 거주지가 확실한 자에게는 사전에 통지함이 옳고 책벌 당한 자에게는 해별되도록 힘써야 한다.

#### 제51조 예배 불참 교인의 처리

본 교회 입교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한 것도 아닌데, 뚜렷한 범과도 없이 예배와 교회의식에 불참하면 당회는 그 교인에게 출석을 권면할 것이요, 6개월이 경과하도록 일체 불응하면 당회는 그 입교인에게 먼저 통지한 후 견책해야 한다. 그 후 그 입교인에게 별다른 비난이 없고 다시 교회예배와 의식에 참여하면 자동 해별된다.

#### 제52조 목사의 사직 청원

목사가 사직을 청원하면 1년동안 유예기간을 두고 이유와 목적을 알아볼 것이요, 그 결과가 목사의 직을 수행하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청원대로 사직을 허락할 것이요, 목사명부에서 이름을 삭제하고 평교인의 이명을 주어 소원하는 지교회로 보내야 한다.

**제53조**

어떠한 입교인이든지 본 교회의 이명서 없이 다른 교파에 가입하면 이는 무례한 일이니 본 당회는 제명하고 그 사건을 본 당회록에 기재할 뿐이요 그 교인에 대하여 착수한 송사 안건이 있으면 계속 재판할 수 있다.

**제54조**

뚜렷한 범과 없는 목사가 본 장로회의 관할을 배척하고 그직을 포기하거나 자유로 교회를 설립하거나 이명서 없이 다른 교파에 가입하면 노회는 그 성명을 노회 명부에서 삭제만 하고 그 사유를 회록에 기재하되 그 사람에 대하여 착수한 송사 안건이 있으면 계속 재판할 수 있고 만일 이단으로 인정하는 교파에 가입하면 정직이나 면직 홀 출교도 할 수 있다.

**제8장 증거조 규례**

**제55조**

치리회가 증거를 채용할 때에 마땅히 주의하여 공평하게 할지니 증인될 자 중에는 다 증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요 증인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도 다 믿을 만한 자가 못 된다.

**제56조**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아니하는 자와 후세 상벌을 믿지 아니하는

**제53조 타교단 가입 입교인의 처결**

본교회 입교인이 이명 없이 다른 교파에 가입했으면 당회는 입교인 명부에서 그 이름을 삭제하고 당회록에 기재하는 것으로 처결이 종결된다. 단, 그가 재판에 계류 중이면 계속하여 재판할 수 있다.

**제54조 목사직 포기와 관할 배척**

목사가 노회의 관할을 배척하고 그 직을 포기하거나, 자유로 교회를 설립하거나 이명 없이 다른 교파에 가입하면 노회는 목사 명부에서 그 이름을 삭제하고 노회록에 기재하는 것으로 처결이 종결된다. 단, 그가 재판에 계류 중이며 계속 재판할 수 있고, 만일 이단으로 인정되는 교파에 가입하였으면 면직 혹은 제명출교도 할 수 있다.

**제8장 증거조사 규례**

**제55조 증인 채택**

재판회(국) 증인이나 증거를 채택할 때에 신청된 증인이 다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격 있는 증인이라도 다 믿어야 할 것도 아니니, 신중하며 공평되게 하여야 한다.

**제56조 증인의 자격**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아니하는 자와 후세의 상벌을 믿지 아니하는 자와 선서의 책임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 외에는 원칙적으로 채용할만

자와 선서의 책임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 외에는 채용할 만한 증인이 된다. 원피고는 각기 상대방의 증인 제출에 대하여 어떤 사람을 물론하고 거절할 수 있고 치리회는 그 증인에 대하여 채용할 가부를 결정할 것이다.

#### 제57조

어떤 증인이든지 가히 믿을 만한 것과 어느 정도까지 시인할 만한 것은 다음 경우들을 참작할 수 있다.

1. 원피고의 친척되는 경우.
2. 소송 판결에 직접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
3. 나이가 어린 경우.
4. 지력이 부족한 경우.
5. 품행이 악하거나 사나운 성품이 있는 경우.
6. 본 교회 책벌 아래 있는 경우.
7. 성질이 조급하고 판별력이 없는 경우.
8. 어떠한 형편을 불문하고 그 소송 사건에 바른 말 할 여부와 알 수 있는 여부와 간접으로 이해(利害) 받을 관계가 있는 여부를 인하여 치우칠 폐가 있는 경우.

#### 제58조

시아비는 아내에 대하여, 아내는 지아비에 대하여 증거할 수 있으나 치리회가 강권하지는 못할 것이다.

#### 제59조

증거는 구두(口頭)로 하고 필기한 서면이나 인쇄한 문자로도 하고

한 증인이 된다. 원고나 피고가 신청한 증인에 대하여 각기 상대방 증인에 대한 항변이 있으면 채택여부를 재판회(국)가 결정한다.

#### 제57조 증언의 판단

증인의 증언은 다음 각 항을 참작하여 판단한다.

1. 증인이 원·피고의 친척인 경우
2. 이 사건 판결에 따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나이가 어린 경우
4. 지력이 부족한 경우
5. 품행이 악하거나 사나운 성품이 있는 경우
6. 본 교회의 책벌 중에 있는 경우
7. 성질이 조급하고 분별력이 없는 경우
8. 증언하는 사건을 알 수 있었을 여부, 바른 말을 할 여부, 정리를 따라 치우칠 폐단이 있는 경우

#### 제58조 부부간의 증언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증언할 권한과 증언을 거부할 권한을 가진다.

#### 제59조 증인의 방법

증인의 심문과 답변을 재판석에서 구두 혹은 서면으로 할 수 있고, 재판회(국)가 그 필요를 인정할 때에는 재판석 밖에서도 할 수 있다.

직접으로 하며 형편을 따라 간접으로도 할 수 있다. 범죄 안건에는 한 사람의 증거뿐이요 다른 증거가 없으면 소송 안건을 확실히 결정하기 어려우나 소장 한 통에 같은 종류의 죄를 열거하였는데 매 사건에 대하여 각각 다른 증인이 한 사람씩만 있을 지라도 가히 믿을 만한 실증이면 그 소장은 전부 결정할 수 있다.

#### 제60조

본회 회원 외에 선후(先後) 심문할 증인의 동석을 허락하지 않는다.

#### 제61조

증인을 심문하는 차서는 치리회가 심문한 후 그 회의 허락을 받아 증인을 제출한 편에서 묻고 후에 상대자가 그 증인에 대하여 묻고 그 후에 그 재판회 위원이 심문할 것이나 그 사건에 관계 없는 말이나 회롱의 일을 묻지 아니할 것이요 필요한 사리만 나타내기 위하여 재판회의 특허를 얻는 것밖에는 증인을 제출한 자가 그 증인에게 증언을 암시하는 말로 묻지 못한다.

#### 제62조

증인을 심문하기 전에 회장은 증인에게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선서하게 한다.

원칙적으로 범행마다 각기 두 세 증인이 있어야 하나, 한 사건에 범행이 여러가지일 경우에는 범행마다 한 증인만 있어도 무방하다.

#### 제60조 증인의 동석 불허

때를 제외하고서는 선후 심문할 증인의 동석을 허락하지 않는다.

#### 제61조 증인 심문의 차서

증인심문의 차서는 아래와 같다.

##### 1) 원고측 증인 심문

- ① 재판회(국)의 심문
- ② 증인 신청측(원고)의 심문
- ③ 상대측(피고)의 심문
- ④ 재판회(국)의 재심문

##### 2) 피고측 증인 심문

- ① 재판회(국)의 심문
- ② 증인 신청측(피고)의 심문
- ③ 상대측(원고)의 심문
- ④ 재판회(국)의 재심문

단, 재판회(국)의 심문은 회(국)장 혹은 서기에게 일임하되 사건과 무관한 심문, 품위를 잃은 표현의 심문 등은 할 수 없다.

#### 제62조 증인선서

증인을 심문하기 전에 재판회(국)장은 증인에게 일어서서 오른손을

「후일에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문답할 것같이 지금 알지 못함이 없으사 사람의 마음을 검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소송안의 증인으로 출석하였으니 사실대로 직언(直言)하며 사실 전부를 말하며 사실밖에 덧붙이지 아니하기로 선서하느뇨」

**제63조**

증인에게 심문하는 말은 청구하는 자가 있을 때에만 필기할 것이요 원고 피고나 재판회가 필요로 인증할 때에는 증인에게 문답을 일일이 기록하고 회석에서 낭독하여 증인의 확인 날인을 받는다.

**제64조**

치리회 서기(서기가 별세하였거나 출타하였거나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시무하지 못할 때에는 회장이 대행함)가 기록의 원본(原本)이나 초본(抄本)에 서명 날인하면 상회 및 다른 회에서 족히 신용할 증거로 인정한다.

**제65조**

어느 회를 물론하고 전조와 같이 작성한 증인의 공술은 본 회의 수집한 증거와 같게 인정한다.

**제66조**

재판 중에 원고 혹은 피고나 증인의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한 경우가 있으면 그 쌍방의 청원에 의하여 본 치리회가 목사 혹은 장로 몇 명을 증거 조사국 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들고 아래와 같이 선서하게 한다.

**증인 선서문**

후일에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문답할 것같이 지금 알지 못함이 없으사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소송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였으니, 사실대로 직언하며, 사실 전부를 말하며,

사실이 아니 것을 덧붙이지 아니할 것을 선서합니다.

년 월 일

증인 ○ ○ ○ (인)

**제63조 증인 심문조서**

증인 심문조서는 재판석에서 낭독한 후 증인의 확인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64조 서기 날인 문서의 증거 능력**

치리회 서기(서기가 별세하였거나, 출타하였거나, 기타 사정으로 시무할 수 없을 경우에는 회장이 대행한다)가 기록의 원본이나 초본에 서명날인 하였으면 상회 및 다른 회에서 족히 신용할 증거로 인정된다.

**제65조 증인 진술의 증거 능력**

어느 회를 물론하고 전조와 같이 작성한 증인의 공술(진술)은 본회가 수집한 증거와 동일하게 인정한다.

**제66조 증거 조사 위원**

재판회(국)는 본 치리회 회원 중에서 2인 이상의 증거 조사위원을 선

1. 위의 증거 조사국 위원은 본 치리회 회원 아닌 다른 회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2. 위의 조사국은 쌍방의 제출한 증거를 받을 것이요 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조사하기 위하여 각 관계자에게 회집하는 날짜와 처소를 통지하고 조사할 때에는 본 치리회의 법규대로 구두로 문답하든지 필기한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되 증인에게 대한 원피고의 직접 문답과 교환 문답을 진행한다.
3. 어떻게 수합한 증거가 본건에 대한 관계 유무와 신용의 족부족(足不足)은 본 재판회가 진행한다.
4. 증거 조사국은 수취한 증거안에 서명 날인하여 본 재판회 서기에게 교부한다

#### 제67조

본 치리회가 재판회를 열 때에 본 치리회 회원이라도 입증하게 할 수 있으니 그 회원도 다른 증인과 마찬가지로 선서 입증한 후에 여전히 본회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 제68조

아무 교회 교인 중 누구를 막론하고 증인 소환을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혹 출석하였을지라도 증언하기를 불응하면 그 형편대로 거역하는 행위를 징벌할 것이다.

#### 제69조

어느 치리회의 종국 결안에 상소 기간이 끝난 후라도 피고를 면죄할 만한 새 증거가 발견되면 피고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수

임하여 재판석 밖에서 행할 수밖에 없는 어느 특정 사안에 대한 증거 조사를 위탁할 수 있고, 증거 조사위원은 증거 조사 규례대로 조사한 결과를 서명 날인하여 재판회(국)에 보고한다.

#### 제67조 재판회(국)원의 증언권

재판회(국)가 채택하면 본 재판회(국)원도 증인 선서문대로 선서하고 증언할 수 있고, 증언 후에도 재판회원(국)권 행사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제68조 증인의 징벌

증인이 재판회(국)의 소환을 받고서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혹 출석하여 증언을 거부하면 형편을 따라 재판 없이 견책할 수 있다.

#### 제69조 재심 청구권과 허락

상소기간이 만료된 후라도 채택된 증거가 허위임이 드러났거나, 혹은 새 증거가 확실하게 나타나 피고를 면죄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소(受訴) 재판회는 재심에서 공의가 나타날 줄로 알면 허락할 수 있다.

### 제70조

상회에 상소하여 재판 중에 긴급(緊重)한 새 증거가 발현되면 상회는 재심하기 위하여 하회로 환송할 수 있고 쌍방이 상회에서 직결하기를 원하면 상회가 그 증거를 조사하여 판결할 수 있다. 단, 재심하는 경우에는 제 100 조를 적용한다.

## 제9장 상소하는 규제

### 제71조

당회나 노회에서 처리한 사건을 각기 차서에 의하여 상회에 상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검사와 교정, 2. 위탁 판결, 3. 소원, 4. 상소.

#### (1) 검사와 교정

### 제72조

본 교회와 부속회에서 처리한 사건은 그 당회에 보고할 것이요, 그 당회는 그 사건을 검사한 후에 접수하여 당회 문부에 편입할 것이

때에는 그 사건을 판결한 원심 재판회(국)가 재심청구를 받아 재심할 수 있다.

### 제70조 재판 중의 새 증거 처리

상소사건 심리 중 나타난 새 증거는 원심 하회로 환송하여 다시 심리하게 하거나, 당사자 쌍방이 상회에서 직결하기를 원하면 상회재판회(국)가 그 증거를 조사하여 판결할 수 있다.

단, 재심하는 경우에 하회 재판회(국)에서 결정한 시벌이 정직, 수찬 정지, 면직, 제명출교일 경우 재심 재판회(국)의 판결이 나기까지 원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

## 제9장 상소(上訴)하는 규제

### 제71조 상소의 종류

당회나 노회에서 처결한 사건에 대하여 각기 그 차례를 따라하는 상소(上訴)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1. 검사와 교정 2. 위탁판결 3. 소원(訴願) 4. 상소(上訴)

### 제1절 검사(檢査)와 교정

### 제72조 하회 회의록의 검사

본교회 부속회에서 처리한 사건을 당회에 보고해야 하고, 당회는 그 보고를 검사하여 접수한 후 당회 문부에 편입한다.

다. 당회 이상 각 상급회는 각기 관하 각 회록을 매년 1차씩 검사할 것이요, 각 하회가 그 회록을 올려 보내지 아니하면 상회는 편의대로 올려 보내라든지 날짜를 정하여 올려 보내라든지 독촉 명령을 발할 수 있다.

### 제73조

상회가 하회 회록을 다음에 의하여 검사한다.

1. 경과 사건을 사실대로 기록한 여부
2. 처리한 사건을 교회 헌법에 의하여 결정한 여부
3. 사실을 지혜롭고 공평하게 덕을 세우게 처리한 여부

### 제74조

상회가 하회 회록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할 때에 그 하회 총대에게는 가부권이 없다.

### 제75조

상회가 하회 회록을 검사하여 착오된 사건이 있으면 계책(戒責)하는 것을 본회 회록과 하회 회록에 기록하는 것이 항례이나 하회에 오착이 중대하여 위해(危害)가 있게 되면 상회는 부득이 하회에 명령하여 개정하게 하거나 변경하게 하되 기한을 정하여 준행 여부를 회보하게 할 것이다. 단, 재판 사건은 상고를 접수 처리하기 전에는 하회 판결을 갑자기 변경하지 못한다.

### 제76조

상회는 어느 때를 물론하고 그 소속 하회가 헌법에 위반되게 처리한 사건이 있는 줄을 확인하면 하회로 하여금 정한 처소에 그 문부

이상 각 상급회는 하회 회의록을 매년 1차 씩 검사해야 하고, 하회가 회의록을 상송(올려 보낼)하지 아니하면 기일을 정해 독촉명령을 할 수 있다.

### 제73조 하회 회의록의 검사사항

상회가 하회 회의록을 검사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경과 사건을 사실 그대로 기록하였는가 여부
2. 처리된 사건이 교회 헌법대로 적법하게 처리했는가 여부
3. 상정된 의안을 지혜롭고 공평하며 덕을 세우기에 합당하게 처리하였는가 여부

### 제74조 하회 회원의 결의권 중지

상회가 하회 회의록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할 때에 그 하회 소속 회원에게는 결의권이 중지된다.

### 제75조 상회의 계책권(戒責權)

상회가 하회 회의록 검사에서 나타난 착오에 대해서는 계책할 수 있고, 계책할 때에는 그 계책을 하회 회의록과 본회 회의록에 함께 기록한다. 착오가 중대하면 상회는 기한을 정해 하회에 명령하여 정정하고 회보하게 한다.

단, 재판사건에 대해서는 상소가 없는 한 상회가 간섭하지 못한다.

### 제76조 계류 사건의 선전 금지

상회는 그 소속하회의 사건처결에서 헌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언제든지 회의록과 관계문서와 함께 상회에 보고하게 할 것이요, 착오가

를 가지고 와서 처리한 형편을 보고하게 할 것이요, 그 착오된 사실이 명백히 발견되면 상회가 직접 변경하든지 하회에 환송하여 처단할 것을 지도할 수 있다. 혹시 어떠한 소원이나 상소를 불문하고 본 치리회나 혹은 그 재판국에서 재판하는 중 판결 언도 전에 피고 혹은 원고가 상회원에게나 일반 민중에게 대하여 변론서나 요령서를 출간 혹은 등사하여 직접 혹은 간접으로 선전하면 치리회를 모욕하는 일이니 그 행동을 처리하고 그 상소를 기각할 수 있다.

### 제77조

하회가 각기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이단과 부패한 행위가 성행하며 뚜렷한 행악자가 징벌을 면하게 되며, 처결한 사건을 회록에 누락하였든지 잘못 기록하였을 때 상회는 이런 사실을 확인하면 하회로 하여금 회록의 검사를 받게 한 후 문부의 잘 잘못을 물론하고 그 사건을 처리하되 76 조를 적용한다.

### (2) 위탁 판결

### 제78조

위탁 판결은 하회가 상회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인데 본회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재판 사건에 대하여 지도를 구하는 것이나 보통 각회는 자체의 판별력으로써 각기 사건을 판단하는 것이 교회에 더 유익이 된다.

중대하면 기한을 정해 하회로 하여금 시정하고 회보케 하거나, 상회가 직접 시정할 수 있다. 어떠한 소원사건이나 상소사건을 불문하고 본 치리회 재판회나 재판국에서 재판하는 중, 판결선고 전에 피고 혹은 원고가 변론서, 해명서, 요령서 등을 작성하여 직접 혹은 간접으로 유포하거나 세상 법정에 소송을 제기한 자는 그 행위를 추가하여 시벌하거나 상소를 기각할 수 있다.

### 제77조 하회의 오실(誤失)과 그 처결

하회가 제 각기 그 직무와 본분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행악자가 발호(跋扈)하며 이단과 부정과 부패행위가 성행하며 행악자가 징벌을 받지 아니하며, 처결 사건을 회의록에 누락하거나 잘못 기록한 사실을 확인하면 전조와 같이 기한을 정해 하회로 하여금 시정하고 회보케 하거나 상회가 직접 시정할 수 있다.

### 제2절 위탁 판결

### 제78조 위탁 판결의 대상

하회가 아래와 같이 형편상 판결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재판이 불가능한 경우, 하회 혹은 하회 회장이 한층 높은 상회에 위탁 판결을 청구하면 재판관할에 구애 없이 상회가 심리하여 판결한다.

1. 미조직 교회의 모든 재판사건
2. 원고나 피고 등 사건 당사자를 제외하면 성수 미달인 경우
3. 판결하기가 심히 어려운 사건
4. 판례를 남겨 후일에 본을 삼을만한 사건

**제79조**

하회가 전례 없는 사건이나 긴중한 사건이나 판결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형편상 상판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하회 결정이 공례(公例)나 판결례가 될 듯하거나 하회 회원의 의견이 한결같이 아니하거나 혹은 어떤 사고로 인하여 마땅히 상회에서 선결하는 것이 합당한 안건은 위탁 판결을 구한다.

**제80조**

위탁 판결은 본회보다 한층 높은 회에 대하여 청구하는 것이니 (1) 하회가 결정하기 전에 준비 재료로 상회의 지도를 구하기도 하며, (2) 직접 상회의 심사와 판결을 구한다. 지도만 구하는 안건이면 하회는 그 결정을 임시로 정지하고, 심사 판결을 구하는 것이면 그 사건은 상회에 전부 위임한다.

**제81조**

상회가 위탁 사건에 대하여 의논할 때에 그 하회 총대도 참석하여 협의하며 투표할 수 있다.

**제82조**

상회가 하회 수탁(受託)사건에 대하여 심사 판결을 책임으로 할 것이 아니니 그 사건에 대하여 지시만 하든지, 혹은 지시 없이 그 회에 환송하든지 상회의 결의대로 한다.

- 5. 전례 없는 중대사건
- 6. 목사가 시무교회 장로를 피고로 고소한 사건
- 7. 교회 건덕상 상회 위탁이 유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79조 상회의 사실심**

상회가 하회의 위탁 판결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재판관할에 불구하고, 사실심 심리규정을 따라 심리 판결한다.

**제80조 위탁의 범위**

위탁판결은 하회가 관할상회에 사건처결의 지도만을 구하거나, 직접 심리판결까지 구할 수 있다.

**제81조 당사 하회총대의 회원권**

상회가 위탁 판결 사건을 처결할 때에 당사 하회총대와 회원권 행사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82조 위탁 처결의 범위**

상회는 하회의 위탁 판결 사건에 대하여 청구범위에 구애 없이 설혹 판결을 위탁했음지라도 사건 처결의 지도만 하든지, 지도 없이 그냥 환송할 수도 있다. 단, 상회가 직접 판결하였을 경우에는 판결문, 재판기록, 관계서류를 하회로 송달하여 이를 집행케 한다. 하회는 판결 공포까지 상회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3조

하회의 위탁으로 상회가 수리할 때는 그 안건 기록을 즉시 상회에 올려 보낼 것이요, 상회가 접수할 때에는 원고 피고의 진술도 청취한다.

### (3)소원

### 제84조

소원(訴願)은 서면으로 상회에 제출하는 것이니 하회 관할에 속하여 그 처리권에 복종하는 자 중 1인 혹은 1인 이상이 행정사건에 대하여 하회가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법한 행동이나 결정에 대하여 변경을 구하는 것이다. 폐회 후 그 회를 대리하는 재판국에서 결정한 행정 사건에 대하여도 본회 결정에 대한 것과 같이 상회에 소원할 수 있고, 그 재판국에서 결정할 때에 참여한 회원 중 3분의 1이 소원하는 일을 협의 가결하였으면 상회가 그 소원을 조사 결정할 때까지 그 위원회의 결정을 보류한다.

### 제85조

소원에 대한 통지서와 이유서는 하회 결정 후 10일 내로 작성하여 그 회 서기에게 제출할 것이요(서기가 별세하였거나 있지 않거나

### 제83조 위탁청구의 구비서류

하회가 관할 상회에 위탁 판결을 청구할 때 그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다.

1. 위탁 판결 청구서
2. 고소장
3. 죄증 설명서
4. 마 18:15-17에 의한 권고사실 진술서
5. 기타 관계문서 일체

### 제3절 소원

### 제84조 소원의 정의와 대상

소원(訴願)이란 하회 관할 하에 있는 자 중 1인 혹은 1인 이상이 행정사건에 대하여 하회가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법한 행동이나 처결에 대하여 상회에 변경을 구하는 송사를 가리킨다. 폐회 후 그 회를 대리하는 노회 재판국의 행정처결도 소원의 대상이 된다.

### 제85조 소원의 기일과 절차

소원인은 하회의 처결(판결) 후 10일 이내에 소원통지서와 소원장, 소원이유 설명서를 경유과정 없이 직접 그 하회 서기에게 제출하는(서기가 별세하였거나, 주거처에서 만날 수 없거나 기타 사정으로 시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장에게 내용증명으로 우송하는) 것으로 소원은 성립되며, 이같이 소원이 성립되면 피소원회가 된 하회서기는 상회 정기회 개회 5일전까지 그 소원 통지서와 소원장, 소원 이유 설명서 및 그 안건을 처결한 관계서류 일체를 상회서기에게 상송(올려

혹 시무하기 불가능한 때는 회장에게 제출한다), 그 회 서기는 상회 정기회 개회 다음 날 안에 그 소원 통지서와 이유서와 그 안건에 관한 기록과 일체 서류를 상회 서기에게 교부한다..

#### 제86조

재판 사건 외 행정 사건에 대하여 하급 처리회에서 결정할 때에 참석하였던 자 중 3분의 1이 연명하여 소원을 선언하면 그 사건을 상회가 결정할 때까지 하회 결정을 중지한다.

#### 제87조

소원하기로 성명한 자는 상회 그 다음 정기회 개회 다음날 안에 소원 통지서와 이유서를 상회 서기에게 제출한다.

#### 제88조

상회는 그 소원장이 규정대로 되고 소원할 만한 이유가 있는 줄로 인정할 때에는 피소환 하회의 전 결정과 그에 관계되는 기록을 낭독 후 쌍방의 공술을 청취한 후 그 사건을 판결한다.

보낼)할 의무가 부과된다.

#### 제86조 3분의 1이상의 특권

각급 처리회 및 처리회 재판회(국)의 행정처결 당시, 결의권을 행사한 회(국)원 3분의 1이상이 상회에 소원할 것을 선언하면, 이 소원에 대한 상회의 결정이 날 때까지 하회의 처결효력은 즉시 정지되나, 그 처리회의 처결 후 10일 이내에 위 3분의 1이상이 연명한 소원통지서, 소원장, 소원이유 설명서를 그 하회 서기에게 제출하지 아니하면 소원은 실효(失效)되고 정지되었던 하회의 처결은 즉시 발효된다. 회기 중 회의석상에서 소원할 것을 선언한 여부에 관계없이 소원기일 이내에 위 3분의 1이상이 연명하여 소원하면 소원장 접수와 동시에 하회의 처결효력이 즉시 정지된다.

#### 제87조 소원인과 하회 서기의 의무

3분의 1이상이 연명하여 소원한 소원인도 상회 정기회 개회 익일까지 소원 통지서와 소원장, 소원이유 설명서를 상회 서기에게 제출하지 아니하면 소원 취하로 보아 하회의 원처결은 그대로 확정되며, 피소원 하회 서기는 상회 정기회 개회 익일까지 소원 통지서와 소원장, 소원이유 설명서 및 그 안건을 처결한 관계서류 일체를 상소(올려 보낼)할 의무가 부과된다.

#### 제88조 소원건 처리

상회 재판회(국)는 그 소원장이 법규상 하자가 없고, 소원할만한 이유가 있는 줄로 인정되면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라 심리 결정한다.

1. 하회의 처결 관계서류 일체를 낭독한다.
2. 관계회의록을 낭독한다.

**제89조**

상회가 그 소원이 적법인 줄로 인정할 때에는 하회의 작성한 사건이나 결정의 전부 혹은 일부를 변경할 것이니 이런 경우에 상회는 하회에 대하여 처리 방법을 지시한다.

**제90조**

소원을 제출한 자는 소원자가 되고 소원을 당한 자는 피소원자가 되는데 피소원자는 보통 하회가 되나니 그 하회는 회원 중 1인 이상을 대표로 정할 것이요 그 대표자는 변호인의 방조를 청구한다.

**제91조**

소원이나 피소원자 된 하회 회원 등은 그 사건 심의 중에는 상회의 회원권이 정지된다.

**제92조**

소원자나 피소원자는 그 상급회에 상고할 수 있다.

3. 소원인(대표)의 심문과 진술

4. 피소원 하회 대리위원의 심문과 진술

5. 합의<공개정지>

소원 이유 설명서를 낭독하고 토론 없이 항목마다 거수표결로 하회 처결의 적부를 가린다.

6. 결정서 채택

서기가 작성한 결정서를 채택한다.

**제89조 처리 방법의 시달**

소원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하회가 처결한 사건이나, 결정의 전부 혹은 일부를 변경하도록 결정서를 통해서 하회에 시달하되, 등기 배달증명 우편을 통해 송달하여야 한다.

**제90조 소원 당사자**

소원을 제출한 자는 소원인이 되고 소원을 당한자는 피소원인이 되는데, 피소원은 개인이 아니고 하회이니, 그 하회는 하회원 중에서 대리위원을 선임하여 상회의 심리에 대비토록 하되, 이 대리위원은 상회원 중에서 변호인을 지명 청구하여 돕는자를 구할 수 있다.

**제91조 소원 당사자의 회원권 정지**

소원인이나 피 소원자된 하회가 파송한 총대들은 해당 소원건 심리중 회원권이 정지된다.

**제92조 재소원 제기권**

소원인이나 피소원인은 원심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다시 상급 처리회에 소원할 수 있다.

### 제93조

피소원자 된 하회는 그 사건에 관계되는 기록 전부와 일체 서류를 상회에 올려 보냄이 옳고 혹 올려 보내지 아니하면 상회는 반드시 가책(加責)할 것이요 기록과 서류를 올려 보낼 때까지와 그 사건을 심리 처결할 동안에 상회는 관계되는 쌍방의 권리를 의구히 보존하게 한다.

### (4) 상소

### 제94조

상소(上訴)는 하회에서 판결한 재판 사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상회에 제출하는 것이니 원피고를 불문하고 다 상소를 제기하는 자는 상소인이라 하고 상소를 당한 자는 피상소인이라 한다. 소송 사건에 대하여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면 상소하는 것 밖에는 다른 길이 없고 상소가 제출되면 하회 회원은 그 본회의 판결에 대하여 이의(異義)나 항의나 의견서를 제출할 뿐이요 언권이 없다.

1. 폐회 후 그 회를 대리한 재판국의 판결에 대하여도 본회에서 행한 판결과 같이 원고 피고는 다 상회에 상소할 수 있다.
2. 공소심에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증거조(調)를 취급할 수 있고 상고심에서는 증거조를 폐한다.

### 제95조

상소를 제기할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하회가 재판을 불법하게 하는 때.

### 제93조 쌍방 권리의 의구 보존

피소원 하회 서기가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를 상송(올려 보낼) 해야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할 때까지 해당하회의 회장과 서기의상회 총대 피선거권 제한을 하회에 시달해야 하고, 소원 당사자 쌍방의 권리는 하회의 처결 이전과 같이 보존된다.

### 제4절 상 소

### 제94조 상소와 피상소 하회원의 회원권

상소란 하회 판결의 취소 혹은 변경을 구하는 송사이니 원·피고를 불문하고 상소를 제기하는 자는 상소인이 되고, 상소를 당한 자는 피상소인이 된다. 상소장이 접수되면 상회원이 된 원심 하회가 파송한 총대는 그 상소판결에 대하여 이의나 항의나 의견서는 제출할 수 있으나 해당사건 심의 중에는 회원권이 정지 된다.

### 제95조 상소가 가능한 경우

상소 제기가 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다.

1. 하회가 재판을 불법하게 하는 경우
2. 하회가 상소를 방해하거나 방색(防塞)하는 경우 (소원이나 상소 하



2. 하회가 상소하는 것을 불허하는 때.
3. 하회가 어떤 한편에 대하여 가혹히 취조하는 때.
4. 불합당한 증거를 채용하는 때.
5. 합당하고 긴중한 증거 채용을 거절하는 때.
6. 충분한 증거 조사 전에 급속히 판결하는 때.
7. 소송 취급상에 편견이 드러나는 때.
8. 판결 중에 오착이나 불공평이 있는 때.

#### 제96조

상소인은 하회 판결 후 10일 이내에 상소 통지서와 상소 이유 설명서를 본회 서기(서기가 별세하였거나 부재 혹 시무하기 불능할 때에는 회장에게 제출한다)에게 제출할 것이요 그 서기는 그 상소장과 안건에 관계되는 기록과 일체 서류를 상회 다음 정기회 개회 다음날 안에 상회 서기에게 교부한다.

#### 제97조

상소인 자기나 대리할 변호인은 상회 정기회 개회 다음날에 상회에 출석하여 상소장과 상소 이유 설명서를 상회 서기에게 교부한다. 상소인이 전기 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불가항력의 고장을 인하여 위의 기간 안에 출석하지 못한 믿을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그 상소는 취하한 것으로 인정하고, 본 하회의 판결은 확정된다.

- 여 이미 하회가 처결하거나 판결한 사건은 하회 경유대사이 아닌데도, 경유 운운하며 상소기일을 놓치게하는 경우)
3. 하회가 어떤 한편에게만 가혹하게 심문하는 때
4. 불합당한 증거를 채택하는 경우
5. 합당하고 중요한 증거 채택을 거부하는 경우
6. 증거조사나 충분한 심리 없이 졸속히 판결하는 경우
7. 소송 취급에 편견이 드러나는 경우
8. 판결 중 오착이나 불공평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6조 상소의 기일과 절차

상소인은 하회 판결문 접수 후 10일 이내에 상소통지서와 상소장, 상소이유 설명서를 그 하회서기에게 제출하는 (서기가 별세하였거나, 주거처에서 만날 수 없거나, 기타 사정으로 시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장에게 내용 증명으로 우송하는) 것으로 상소는 성립되며, 이같이 상소가 성립되면 원심하회의 서기는 상회 정기회 개회 5일전까지 그 상소 통지서와 상소장, 상소이유 설명서 및 해당사건을 처결한 관계 서류 일체를 상회서기에게 상송할 의무가 부과된다.

#### 제97조 상소의 취하

원심 하회에 상소절차를 필한 상소인이 상회 정기회 개회 익일에 상회에 출석하여 상소 통지서와 상소장, 상소이유 설명서를 상회 서기에게 제출하지 아니하면 상소 취하로 인정하고 원심 하회의 판결은 확정된다. 단,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말미암는 것이었다는 실증을 회기중에 제출하면 예외로 한다.

### 제98조

상소인과 피상소인 되는 하회 회원은 그 사건 심의하는 상회석에 회원권이 정지된다.

### 제99조

상소인이 상소 통지서와 상소장과 상소 이유 설명서를 예정 기일 안에 제출하였으면 상회는 규례대로 재판한다.

1. 상회는 하회의 판결과 상소 통지서와 상소장과 상소 이유 설명서를 낭독하고 당사자 쌍방의 설명을 청취한 후에 상소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2. 상회는 상소를 처리하기로 작정한 후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처리한다.

(1) 상소 사건에 관한 하회 기록 전부를 자초지중 낭독한다(당사자 쌍방의 승낙으로 필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묵과할 수 있다).

(2) 당사자 쌍방이 구두로 진술하되 시작과 종결은 상소인으로 하게 한다..

(3) 당사자 쌍방을 퇴석하게 하고 상회 회원이 합의(合議)한다.

(4) 상소 이유 설명서에 기록한 각 조를 회장이 토론 없이 축조 가 부하여 각 조에 상소할 이유가 없고 또 하회 처리도 착오가 없는 줄로 인정하면 상소는 하회 판결이 적합한 줄로 인정 할 것이요, 각 조 중 1 조 이상이 시인할 만한 이유가 있는 줄로 인정하면 상회는 하회 판결을 취소하든지 변경하든지 하회로 갱심(更審)하게 하든지 편의대로 작정할 것이요 상회가 하회 판결을 변동할 때에는 그 결정과 이유를 회록에 기재하고 필요로 인정하는 때는 그 판결 해석의 대요를 회록에 기재한다.

### 제98조 법률심

총회 상소심은 법률심이므로 증거 조사를 다시 하지 못하고 다만 기록에 의해 심단한다.

단, 노회가 접수한 상소건은 필요에 따라 증거조사를 다시 할 수 있다.

### 제99조 상소심의 심리절차

치리회는 재판사건을 치리회 재판회가 직할 심리하든지 재판국에 위탁하여 처결하든지 아래와 같은 절차대로 심리 판결한다.

1. 상소사건에 관한 하회의 판결문, 상소 통지서, 상소장, 상소이유설명서, 당해 사건관계 서류 일체를 낭독한다. 다만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의 낭독은 생략할 수 있다.

2. 당사자 쌍방에 대한 심문과 진술 청취

3. 합의(合議) <공개정지>

상소 이유 설명서를 낭독하고 토론 없이 항목마다 거수 표결로 하회 판결의 적부를 판단한다. 상소 이유가 모두 부당하면 상소를 기각하고 하회의 판결을 확정케 한다. 상소이유 중 한 항목이라도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재판회(국)는 하회의 판결을 취소하든지 변경하든지 다시 심리하도록 하회로 환송하든지 결정한다.

4. 판결문 채택

서기가 판결문을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 해석의 대요(심리전말서)를 작성하여 함께 채택한다.

**제100조**

상소를 제기한다 할 때에는 하회에서 결정한 것이 권계나 견책이면 잠시 정지할 것이요 그밖에 시벌은 상회 판결 나기까지 결정대로 한다.

**제101조**

상소가 제기되면 하회는 그 사건에 관한 기록 전부와 일체 서류를 상회에 올려 보낼 것이니 만일 올려 보내지 아니하면 상회는 하회를 책하고 이를 올려 보낼 때까지 하회의 결정을 정지하게 한다.

**제10장 이의와 항의서**

**제102조**

이의(異義)라 함은 어느 치리회에서든지 의안 결정할 때에 회원 중 1인 이상 되는 소수(小數)가 대수(大數)의 결정에 동의하지 아니함을 표시한다.

**제103조**

항의라 함은 이의보다 더 엄중히 하는 것인데 회원중 1인 이상 되는 소수가 그 회의 행사나 작정이나 판결에 대하여 과실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니 그 이유서도 첨부한다.

**제104조**

이의와 항의서가 합식(合式)이요 또 언사가 정당하며 다수에 대한 무리한 풍자가 없으면 회록에 기입한다.

**제100조 하급심 판결의 효력**

상소통지서, 상소장, 상소이유 설명서를 소원기일 안에 하회서기에게 제출하여 상소가 성립되었을 경우 하급심 판결이 권계나 견책이면 판결 선고후 3개월에 자동 소멸되나,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이면 상소심 판결이 나기까지 원심 하회의 판결은 그대로 유지된다.

**제101조 하회 판결 효력의 정지**

원심 하회 서기가 제 98 조에 의한 관계 서류 상송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할 때까지 회장과 서기의 상회총대 피선거권 제한을 하회에 시달해야 하고 하회의 판결효력은 정지된다.

**제10장 이의와 항의서**

**제102조 이의의 정의**

이의란 어느 치리회에서든지 의안을 처결할 때에 다수 측의 결정에 대하여 회원 중 1인 이상이 그 부당성을 주장하는 양심 자유권의 행사를 가리킨다.

**제103조 항의의 정의**

항의란 이의보다 더 엄중하니 회원 중 1인 이상이 다수의 결정이나 처사 및 판결에 대하여 사리를 따라 그 그릇 됨을 밝혀 답변서와 회의록 게재(揭載)를 구하는 특별 요청을 가리킨다.

**제104조 답변서**

항의서가 언사가 합당하고 무리가 없다고 인정되면 치리회는 답변위원을 선임하여 답변하게 하고 이를 회의록에 게재해야 한다.

**제105조**

항의가 본 치리회의 인용한 공례와 의사를 오해한 것이 있으면 본회는 항의에 대하여 답변서를 작성하여 회록에 기재할 수 있으며 답변서를 작성한 후 항의서를 제출한 자가 항의서를 개정할 수 있고, 본 치리회가 답변서를 또한 개정함으로써 그 사건을 끝낸다.

**제106조**

본 치리회 내 결의 사건에 대하여 투표권이 없는 자는 이의서와 항의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재판 안건은 부편 투표한 자 밖에는 이의서와 항의서를 제출하지 못한다. 단, 재판국에서 판결한 사건에 대하여 본회 회원도 이의서와 항의서와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본회 폐회 중 본회를 대리하는 재판국에서 판결한 사건에 대하여는 판결 언도 후 10일 이내에 본회 회원이나 재판국 위원은 이의와 항의서를 작성하여 재판국 서기에게 교부하며 그 재판국 후 재판국 위원은 판결 후 2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재판국 서기에게 교부할 것이다. 재판국 서기는 이의서와 항의서와 답변서를 일일이 등본하여 본회 서기에게 교부하여 본회 회록에 기재하게 한다.

**제 11장 이명자 관리 규례**

**제107조**

목사나 교인은 어느 때와 어느 지방에서 범죄하였든지 그 소속 치리회의 재판을 받는다.

**제105조 재 이의와 재 항의의 처리**

치리회 답변위원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이의자나 항의자는 다시 이의서나 항의서를 제출할 수 있고, 답변위원에게 다시 답변서로 답변케 한 후 회의로에 게재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한다.

**제106조 이의권과 항의권**

행정사건의 경우 결의권이 없는 자와 재판사건의 경우 가표 투표한 재판회(국)원은 각기 이의권과 항의권이 없다.

본회 폐회 후 본회를 대리하는 재판국에서 판결한 재판사건에 대한 이의권과 항의권은 결의권을 갖춘 본회 회원이나 부표 투표한 그 재판국원에게 있고, 이 이의서와 항의서는 판결언도 후 10일 이내 재판국 서기에게 제출해야 하며 동 재판국은 판결후 20일 이내에 이의자와 항의자 및 본 치리회 서기에게 답변서를 송달하며, 본회서기는 이를 회록에 게재해야 한다.

**제11장 이명자 관리 규례**

**제107조 외지 범죄와 치리권**

목사나 교인은 언제 어디에서 범죄하였든지 그 소속 치리회의 재판을 받는다. 단, 고소가 없으면 재판할 수 없고, 다만 교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범행으로 인정되면 치리회가 기소하여 판결할 수 있다.

**제108조**

교인이 다른 지교회에 이명서를 받은 후에 그 지교회에 가입하기까지는 여전히 본회 관할에 속하고(이명서 수취한 후에는 시무하던 직분은 즉시 해제되고 본교회 공동 의회에서 언권과 투표권이 없다) 받은 이명서를 1년 이내에 본 교회로 환부하면 당회는 받은 후에 회록에 기재할 것이나 전날 시무하던 직분을 계속할 수 없다.

**제109조**

목사도 전조와 같이 다른 회에 옮길 이명서를 수취한 후에 그 노회에 가입하기까지 여전히 본 노회 관할에 속하고(이명서 수취일로부터 본노회 안에서 언권과 투표권이 없다) 1년 내로 이명서를 본 노회에 환부하면 노회는 이 사건을 회록에 기입하고 그 회원권은 여전히 지속한다.

**제110조**

목사, 강도사, 목사 후보생에게 이명서를 교부할 때에 그 지정한 노회의 명칭을 분명히 기입할 것이요 지정한 노회가 현존한 동안에 다른 노회는 그 회원을 받지 못한다.

**제108조 이명증서의 발급**

목사나 강도사나 목사후보생 및 입교인은 이명증서로만 이적(移積)한다. 관할 치리회는 이주 사실이 확실한 경우에는 이명증서를 발급해야 하고, 이명증서를 받은 자는 3개월 이내에 이주지 관할 치리회에 이를 제출하고 이적해야 한다. 관할 치리회가 폐지될 때에는 교인은 노회에서 목사는 총회에서 이명증서를 발급하며, 계류된 재판사건이 있을 때에는 각기 상급 치리회에서 계속 재판한다.

**제109조 이명증서 발급과 공권의 해제**

목사나 강도사, 목사 후보생 및 입교인이 관할 치리회에서 이명증서가 발급되면 이적절차의 이행 여부에 불구하고 발급일부터 원 치리회의 회원권, 직원 시무권 등 일체의 공권이 해제된다.

**제110조 이명증서의 기재요건**

이명증서에는 다음사항을 기재하되 특히 이주지 관할 치리회를 명기해야 하고, 다른 치리회에서는 그 이명서를 받지 못한다.

1. 본적
2. 전주소
3. 이주지의 주소
4. 성명
5. 생년월일
6. 수세 년월일
7. 무흠 여부
8. 신행(信行) 형편
9. 목사후보생 합격 년월일

**제111조**

지교회가 폐지될 때에 그 소관 노회가 그 교인을 직할하여 다른 지교회에 속한 이명서를 교부한다. 그 폐지된 당회에서 착수하였던 재판 사건이 있으면 노회가 계속 처리한다.

**제112조**

노회가 폐지되면 대회가 그 노회 회원을 직할하여 다른 노회에 옮길 이명서를 교부할 것이요 그 폐지된 노회에서 착수하였던 재판 사건이 있으면 대회가 계속 처리한다.

**제12장 이주(移住) 기간에 관한 규례**

**제113조**

교우가 다른 지교회에 옮기는 경우에 특별히 이유가 없으면 그 받은 회원증과 이명서를 1년 내로 옮기는 교회에 납부한다.

1. 부모가 옮길 때에 세례 받은 유아(수찬 연령 미만자)가 있으면

10. 강도사 인허 년월일
11. 목사 장립 연월일
12. 가족사항
13. 이주지 관할치리회(노회 혹은 당회)

**제111조 폐지된 지교회 교인의 이명증서**

목사나 강도사, 목사후보생 및 입교인이 발급된 이명증서를 이주지 관할 치리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1년 내에 원소속 치리회로 환부하면 치리회가 이를 수리하는 날부터 회원권은 회복된다. 단, 관계절차를 취하지 않는 한 해제된 직원 시무권은 회복되지 아니한다.

**제112조 폐지된 노회원의 이명증서**

이명증서 발급을 받은 목사, 강도사, 목사 후보생 및 입교인은 그 이명증서를 접수한 치리회로부터 이명접수 회보가 본 치리회에 도달하기까지는 여전히 본 치리회의 관할을 받는다. 단, 이명증서가 발급되면 그날부터 그 치리회의 회원권, 직원 시무권, 일체의 공권이 해제된다.

**제12장 이주(移住) 기간에 관한 규례**

**제113조 이적과 회보의 의무**

목사, 강도사 목사후보생 및 입교인이 다른 노회나 다른 지교회로 이적하는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6개월 이내에 그 받은 이명증서를 이적하는 노회나 지교회에 제출하고 이적해야 한다. 또한 이명증서를 접수한 노회나 지교회 당회에서는 이적후 1개월 이내에 이명증

그 이명서에 함께 기록한다.

2. 이명서에는 옮기는 교회를 분명히 기록할 것이요 그 교회는 이명서를 접수 처리한 후에는 즉시 이명서 발송한 교회에 통지한다.

#### 제114조

목사, 강도사, 목사 후보생도 전조와 같이 옮기는 경우에 이명서에 기입한 대로 그 노회에 가입하되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받은 이명서를 1년 내로 옮기는 노회에 교부할 것이요 입회를 허락한 노회는 즉시 이명서를 발송한 노회에 통지한다.

#### 제115조

교인이 본향과 교회에서 떠난 지 2개년 이후에 이명서를 청구하면 본 당회는 이명서에 그 사실을 기입한다.

#### 제116조

범죄 안건은 범죄 발각 후 1년 내에 개심할 것이요, 교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범행이 아니면 3년을 경과한 후에 개심할 수 없다.

### 제 13장 재판국에 관한 규례

#### 1. 노회재판국

##### 제117조

노회는 본 관내 목사와 장로 중에서 재판국원을 투표 선정할 수 있

서 발급 노회나 지교회 당회로 이를 회보해야 한다.

#### 제114조 이명증서의 발급 기준

이명증서는 무흠한 목사, 강도사, 목사후보생 및 무흠한 입교인에게만 발급하고 재판에 계류중에 있거나 시벌중에 있으면 발급하지 못한다.

#### 제115조 직권 이명과 직권 등록

입교인이 본교회를 떠나 6개월 이상 다른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이명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본 당회가 직권으로 그 입교인의 이명증서를 출석교회로 발송하거나, 출석교회 당회가 직권으로 입적하고 원소속 지교회 당회로 통보할 수 있다. 6개월이 지난 후에 청구한 이명증서에는 그 사실을 기입해야 한다.

#### 제116조 목사의 불법이주

목사가 이명 없이 다른 노회에 가입한 사실이 확인 되는대로 즉결처단의 규례를 적용해서 정직에 처하고, 죄질에 따라 면직할 수 있다. 단, 무지역 노회 소속 목사나 지교회가 해당 지역 노회로 적을 옮길 경우는 이 규정과 무관하다. 치리장로와 집사 및 강도사, 목사후보생도 이 규례를 준용하다.

### 제13장 재판국에 관한 규례

#### 제1절 노회 재판국

##### 제117조 노회 재판회와 재판국

으니 노회 재판국의 국원수는 7인 이상으로 정하되 그 중 과반수는 목사로 선택한다. 노회는 재판 사건을 직할 심리하거나 재판국에 위탁할 수 있고 재판국은 위탁 받은 사건만 심리 판결할 수 있다.

#### 제118조

재판국은 본 국원 중에서 국장과 서기를 택할 것이요, 위탁을 받은 안건에 대하여는 권한이 본회와 동일하여 교회 헌법과 노회에서 적용하는 규칙을 사용하되 처리 후에 보고한다.

#### 제119조

재판국원의 성수는 국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하되 반수 이상이 목사가 되어야 한다.

#### 제120조

재판국원의 회집 날짜와 처소는 본 노회가 결정하거나 노회의 결정이 없으면 재판국이 결정한다.

#### 제121조

재판국이 본 노회 개회 시무 중에서 위탁 받은 안건을 판결하였으면 그 판결을 즉시 보고할 것이요 보고한 후에는 본 노회의 판결로 인정한다.

1. 노회가 재판국의 보고를 전부 채용 혹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할

노회는 재판사건을 재판회로 회집하여 직할 심리하여 판결하든지, 재판국을 구성하여 판결할 수도 있다. 노회 재판국의 국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춘 본 노회 회원 목사 4인 장로 3인을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여 선임 한다. 단, 노회원의 3분의 2 결의로 다른 방법으로도 재판국원을 선임할 수 있다.

#### 제118조 노회 재판국 임원의 직무한계

노회재판국의 국장과 서기는 국에서 호선하며, 노회 서기가 접수 하여 본 노회의 결의로 위탁된 사건만 심리 판결한다.

본노회가 교회 헌법과 규칙에 따라 사건을 처결함 같이 위탁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국도 역시 그러하다.

#### 제119조 노회 재판회(국)의 성수

노회재판회의 성수는 노회성수와 같고, 노회 재판국의 성수는 국원 7명중 5명 이상 출석으로 하되, 그중 과반수는 목사이어야 한다.

#### 제120조 노회 재판국의 재판기일과 장소

재판국의 재판기일과 장소는 본 노회가 결정할 수 있고, 노회의 결정이 없으면 재판국이 결정한다.

#### 제121조 노회 재판국 판결 효력

노회 개회기간 중의 노회 재판국 판결은 노회가 채택해야 본 노회의 판결이 된다. 노회는 재판국의 판결을 그대로 채택하든지 전부를 취소하고 재판회로 회집하여 직할심리를 할 수 있으나, 정정해서 받거



때는 그 안건 전부를 재판 규칙대로 직접 심리 처결할 수 있다.

2. 본 치리회가 폐회한 후 본회를 대리한 재판국에서 재판한 안건은 공포 때로부터 본 노회의 판결로 인정한다.

### 제122조

재판국 서기는 재판 사건의 진행 전말과 판결에 대하여 상세한 기록을 조제(調製)하고 회장과 서기는 그 기록의 정확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를 등본 날인하여 원고피와 본 노회 서기에게 각 한 통씩 교부한다.

### 제123조

재판국은 그 판결을 본 노회 서기에게 위탁 보고하든지 친히 보고할 것이요 본노회 서기는 그 기록과 본회 회록을 함께 상회에 올려 보내어 검사를 받는다.

## 2. 대회재판국

### 제124조

대회는 상설 재판국을 두고 목사 5인 장로 4인을 국원으로 하되 상비 국원제로 3 조에 나누어 매년 3인씩 개선한다.

1. 대회 중에 재판국의 결원이 있으면 대회가 보결하고 대회 폐회 후에 결원되었으면 대회장이 자백하여 대회 개회 때까지 시무하게 한다.

2. 대회는 재판 사건을 직할 심리하거나 재판국에 위탁할 수 있고 재판국은 위탁받은 사건만 심리 판결한다.

나 그 재판국에 다시 재판하도록 환부하지 못한다. 노회 폐회기간 중의 노회 재판국 판결은 판결일부터 본 노회의 판결이 된다.

### 제122조 재판기록

노회 재판국서기는 재판사건의 진행 전말서와 심리 전말서를 작성하여 원·피고에게 줄 수 있고 본 노회서기에게 교부한다. 이 기록에는 국장과 서기가 서명 날인 해야 한다.

### 제123조 노회 재판국의 자동 해체

노회 재판국은 재판국 보고를 노회가 채택함과 동시에 자동 해체된다. 본 노회 서기는 판결문, 재판기록 일체 서류를 상회가 노회록을 검사 할 때에 함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2절 대회 재판국

### 제124조 대회 재판회와 재판국

대회 재판사건은 대회가 재판회로 회집하여 직할심리하여 판결하든지, 이를 재판국에 위탁할 수 있다. 대회 재판국은 목사 5인과 장로 4인으로 구성하되, 국원은 연조제(年組制)로 나누어 매년 3인씩 개선되는 상비부 이므로 사건 유무에 불구하고 항상 조직된다. 대회 재판국의 결원은 대회가 보결하고 폐회 후에는 대회장이 지명 보결한다.

**제125조**

재판국은 국장과 서기를 본 국원 중에서 매년 선거할 것이요 위탁 받은 사건에 대하여는 권한이 본회와 동일하여 교회의 헌법과 대회에서 적용하는 규칙을 사용하되 대회에 보고한다.

**제126조**

대회 재판국의 성수는 4분의 3출석으로 하되 그 중 목사가 반수 이상이라야 한다.

**제127조**

대회 재판국의 집회 날짜와 처소는 대회가 정하거나 대회의 결정이 없으면 재판국이 정한다.

**제128조**

대회 재판국의 판결은 대회가 채용할 때까지 당사자 쌍방을 구속할 뿐이다.

**제129조**

재판국 서기는 재판 사건의 진행과 심리 판결한 것을 상세히 조서에 기재하고 국장 서기는 그 조서의 정확을 증명하기 위하여 등본 날인하여 원피고와 대회 서기에게 각 한통씩 교부한다.

**제130조**

**제125조 국장과 서기의 선임 및 국의 직무 한계**

국장과 서기는 국에서 호선하며 대회 서기가 접수하여 본 대회의 결의로 위탁된 사건만 심리 판결한다. 대회가 교회 헌법과 규칙에 따라 사건을 처결함 같이 위탁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국도 역시 그러하다.

**제126조 대회 재판회(국)의 성수**

대회 재판회의 성수는 대회 성수와 같고, 대회 재판국의 성수는 국원 7인 이상 출석으로 하되, 그중 과반수는 목사여야 한다.

**제127조 대회 재판국의 재판기일과 장소**

대회 재판국의 재판기일과 장소는 대회가 결정하거나 대회의 결정이 없으면 대회 재판국이 결정한다.

**제128조 대회 재판국 판결의 효력**

대회 재판국의 판결은 대회에서 채택될 때까지 당사자 쌍방을 하회 판결문 대로 동결(유지)할 뿐, 다른 효력을 발하지 못한다.

**제129조 대회 재판기록**

대회 재판국 서기는 재판사건의 진행 전말서, 심리 전말서를 작성하여 상소 당사자 쌍방에게 줄 수 있고, 본 대회서기에게 교부한다. 이 기록에는 국장과 서기가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130조 대회 재판국 보고와 대회서기의 의무**

대회 재판국 판결은 대회에 보고하여 채택되어야 대회의 판결이 된

재판국은 그 판결 사건을 대회 서기에게 보고할 것이요 대회 서기는 접수한 등본을 본 회록과 같이 보관한다.

### 제131조

조 대회는 재판국의 판결을 검사하여 채용하거나 환부하거나 특별 재판국을 설치하고 그 사건을 판결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대회가 재판국 판결에 대하여 검사하지 않거나 검사할지라도 변경이 없으면 대회 폐회 때부터 그 판결은 확정된다.

### 제132조

재판국 비용은 대회가 부담한다.

### 제133조

대회가 필요로 인정할 때는 그 결의대로 특별 재판국을 설치하고 상설 재판국 규칙을 적용한다.

## 3. 총회재판국

### 제134조

총회는 상설 재판국을 두고 목사 8인, 장로 7인을 국원으로 선정하되 한 노회에 속한 자 2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국원은 상비 위원제로 3조에 나누어 매년 5인씩 개선하여 개회 때부터 시무할 것이요

다. 대회서기는 판결문과 재판기록 등 일건 서류를 상회가 대회록을 검사할 때에 함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131조 대회 재판국 판결의 확정

대회는 재판국의 판결을 검사하여 그대로 채택하거나 그 재판국에 다시 맡겨 판결 보고하도록 환부할 수 있고 혹은 특별 재판국을 구성하여 다시 재판하도록 위탁할 수도 있으나, 재판국 보고를 정정해서 채택할 수는 없다. 대회가 재판국 보고를 받고서도 검사하지 않거나, 검사할 지라도 변경이 없으면 대회 폐회 때부터 그 판결은 확정된다.

### 제132조 대회 재판국(회) 비용

재판회(국) 비용은 대회 상납금으로 충당하고 장소 당사자에게 징수하지 못한다. 다만 상소사건이 패소되었을 경우에는 패소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 제133조 대회 재판국과 치리권

대회 재판국은 예비적이며 준비적인 심의를 거쳐 본치리회에 보고하여 본치리회의 치리권 행사를 방조하는 위원회 심사에 원칙에 의한 위원회요, 치리회가 아니므로 직접 치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제3절 총회 재판국

### 제134조 총회 재판회와 재판국 구성

총회 재판사건은 총회가 재판회로 회집하여 직할 심리하여 판결하든지 이를 재판국에 위탁할 수 있다. 총회 재판국은 목사 8인과 장로 7인으로 구성하되, 국원은 한 노회에 1인으로 국한되며 연조제(年組

임기 만료한 국원은 향후 1년간 재선되지 못할 것이며 총회의 다른 상비 위원으로 재직할 자도 재판 국원이 되지 못한다.

1. 총회 개회 중에 재판국의 결원(缺員)이 있으면 총회가 보결하고 총회 폐회 후에 결원이 되었으면 총회 회장이 자백하여 총회 개회 때까지 시무하게 한다.

2. 총회는 재판 사건을 직할 심리하거나 재판국에 위탁할 수 있고 재판국은 위탁 받은 사건만 심리 판결한다.

### 제135조

재판국은 회장과 서기를 본 국원 중에서 매년 선거할 것이요 위탁 받은 사건에 대하여는 권한이 본회와 동일하여 교회의 헌법과 총회에서 적용하는 규칙을 사용하되 총회에 보고한다.

### 제136조

총회 재판국원의 성수는 11인으로 정하되 그 중 6인이 목사됨을 요한다.

### 제137조

재판국의 회집 날짜와 처소는 총회가 의정하거나 재판국이 의정한다.

### 제138조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총회가 채용할 때까지 당사자 쌍방을 구속할 뿐이다.

制)로 나누어 매년 5인씩 개선되는 상비부임으로 사건 유무에 불구하고 항상 조직된다. 임기가 만료된 국원은 계속 연임하지 못하고, 다른 상비부와 함께 겸임하지도 못한다. 총회 재판국의 결원은 총회가 보결하고 파회 후에는 총회장이 지명 보결한다.

### 제135조 총회 재판국 임원선임 및 국의 직무한계

국장은 매년 본 국원 중에서 선출하며, 그 외 임원은 국장이 3개 선거 지역 구도를 감안하여 임명하며, 총회 서기가 접수하여 본 총회의 결의로 위탁된 사건만 심리 판결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위탁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총회가 교회 헌법과 규칙에 따라 사건을 처결함 같이 재판국도 역시 그러하다.

### 제136조 총회 재판회(국)의 성수

총회 재판회의 성수는 총회 성수와 같고, 총회 재판국의 성수는 국원 11인 이상 출석으로 하되, 그 중 과반수는 목사여야 한다.

### 제137조 총회 재판국의 재판기일과 장소

총회 재판국의 재판기일과 장소는 총회가 결정하거나 총회의 결정이 없으면 총회 재판국이 결정한다.

### 제138조 총회 재판국의 판결 효력

총회 재판국 판결은 총회가 채택 할 때까지 당사자 쌍방을 현상 그대로 동결할 뿐 다른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고, 하회 판결대로 판결효력이 유지된다.

**제139조**

재판국 서기는 본국 재판 사건의 진행과 예심 판결을 상세히 조서(調書)에 기재하고 국장 서기는 그 조서의 정확을 증명하기 위하여 등본 날인하여 원피고와 총회 원서기에게 각 한 통씩 교부한다.

**제140조**

조 재판국은 판결 사건을 총회 서기에게 위탁하게 하든지 친히 보고할 것이요 총회 서기는 접수한 등본을 본회 회록과 같이 보관한다.

**제141조**

총회는 재판국의 판결을 검사하여 채용하거나 환부하거나 특별 재판국을 설치하고 그 사건을 판결 보고하게 한다. 총회가 재판국 판결에 대하여 검사하지 않거나 검사할지라도 변경이 없으면 총회 폐회 때부터 그 판결은 확정된다.

**제142조**

재판국 비용은 총회가 지불한다.

**제143조**

총회가 필요로 인정할 때는 그 결의대로 특별 재판국을 설치하고 상설 재판국 규칙을 적용한다.

**제139조 총회 재판기록과 보고**

총회 재판국 서기는 재판사건의 진행 전말과 심리 전말서를 작성하고, 재판 판결문에 재판국 국원의 날인 후 서기는 총회에 판결문을 보고한다.

**제140조 총회 재판 판결과 총회 서기의 의무**

총회 재판국은 그 판결사건을 총회에 보고하여 채택되어야 총회의 판결로 확정 된다. 총회 서기는 그 판결문과 재판기록 등 일체 서류를 총회록과 함께 보관할 의무가 부과된다.

**제141조 총회 재판국 판결의 확정**

총회는 총회 재판국 판결을 검사하여 그대로 채택하거나, 총회 재판국에 다시 맡겨 판결 보고하도록 총회 재판국으로 환부할 수 있고, 혹은 특별 재판국을 구성하여 다시 판결하여 보고하도록 위탁할 수도 있으나, 재판국의 보고를 정정해서 채택할 수는 없다. 총회 재판국이 총회에 보고하였는데도 총회가 검사하지 않거나 검사하고서도 변경이 없으면 총회 폐회 때부터 그 판결은 확정된다.

**제142조 총회 재판국 비용**

총회 재판국 비용은 총회 상납금으로 충당하고 상소 당사자에게 징수하지 못한다. 단, 상소사건이 헌의부에서 패소되었을 경우 그 패소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43조 총회 재판국과 치리권**

모든 재판국은 예비적이며 준비적인 심의를 거쳐 본 치리회에 보고하여 본 치리회의 치리권 행사를 방조하는 위원회 심사의 원칙에 의한 위원회요 치리회가 아니므로 직접 치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제14장 치리회 간의 재판 규례

### 제144조

어느 회든지 그 동등된 회를 상대로 소원할 일이 있으면(제 84 조, 제 93 조 참조) 한층 높은 상회에 기소할 것이나 이런 경우에 사건 발생 후 1년 이내에 피고된 회의 서기와 그 상회 서기에게 통지한다.

### 제145조

어느 회든지 전조와 같이 기소하고자 하면 대리 위원을 선정하여 초심(初審)부터 종심(終審) 판결까지 위임할 수 있다.

### 제146조

소원을 접수한 상회는 그 사건을 조사하여 이유가 상당하면 피고 회의 결정 전부 혹은 1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그 피고회에 대하여 처리할 방법을 지시할 것이요, 원고나 피고 회는 또 그 상회에 상소할 수 있다.

## 제 14 장 치리회 간의 재판 규례

### 제144조 치리회 간의 소원

치리회의 행정처결이 본 치리회에도 그 폐단이 인정되면 동등한 치리회 상호간에도 상회에 소원할 수 있다. 소원 통지서, 소원장, 소원 이유 설명서는 1년 내에 피소원 처리회 서기와 상회서기에게 제출해야 소원이 성립된다.

### 제145조 대리위원

소원 처리회 쌍방은 치리회 대리위원 2인 이상을 선임하여 종심 판결 나기까지 위탁해야 한다.

### 제146조 치리회 간의 소원건 처리

치리회 간의 소원건을 접수한 상회 재판회(국)는 소원 당사자 쌍방의 관계문서 일체를 낭독한 후, 소원 치리회와 피소원 치리회의 공술(진술)을 청취하고 소원 이유를 인정할 수 있으면 피 소원회의 처결 전부나 일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이행하게 하되 그 방법까지 지시할 수 있다. 소원 이유가 부당하면 소원을 기각하고 재판비용을 패소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